2024학년도

교육과정 안내 참고자료 [규정 및 지침]



한국교원대학교

■ 차 례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1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7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49
한국교원대학교	타대학과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79
한국교원대학교	복수전전공 이수자 선발 및 이수에 관한 지침	87
한국교원대학교	편입학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지침	93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지침	96
한국교원대학교	계절수업 운영 지침 1	30
한국교원대학교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의 유예 제도 운영 지침	132
대학 강좌 개설	세부 기분 ···································	136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정 1984. 3. 15. 대통령령 제11382호 개정 1985. 9. 13. 대통령령 제11765호 개정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27호 개정 1989. 3. 6. 대통령령 제12639호 개정 1990. 3. 6. 대통령령 제12943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개정 1992. 3. 6. 대통령령 제13606호 개정 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 개정 1997. 2. 27. 대통령령 제15293호 개정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5호 개정 2001. 3. 2. 대통령령 제17145호 개정 2002. 2. 4. 대통령령 제17503호 개정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69호 개정 2006. 2. 28. 대통령령 제19359호 개정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1호 개정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2호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개정 2009. 2. 27. 대통령령 제21335호 개정 2009. 9. 3. 대통령령 제21708호 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개정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1호 개정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개정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9호 개정 2024. 3. 12. 대통령령 제3054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 령으로정한다.
- 제6조(학교의 장)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 7. 2.>
- 제6조의2(부총장)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 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②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27.]

- 제7조(단과대학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24. 3.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등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9. 7. 2., 2024. 3. 12.>
 -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 7. 2., 2024. 3. 12.>
-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 ②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24. 3. 12.>
 - ③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

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 2. 27., 2019. 7. 2.>

④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 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 2. 27.>

[제목개정 2009. 2. 27.]

제9조(부설학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 1. 부설유치원
- 2. 부설초등학교
- 3. 부설중학교
- 4. 부설고등학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 7, 2.>
- 제10조(하부조직)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 10. 29., 2006. 2. 28., 2006. 6. 30., 2019. 7. 2., 2020. 3. 31., 2023. 11. 16., 2024. 3. 12.>
 -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27., 2020. 3. 31.>
 -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사무국 및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20. 3. 31.>
 - ④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

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19. 7. 2.>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제목개정 2009. 9. 3.]

- 제12조(학비보조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 2. 3.>
 -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7., 2024. 3. 12.>
 - 1. 단과대학 · 대학원 · 학과 및 학부의 설치
 - 2. 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설치
 - 3. 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제21708호, 2009.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423호, 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081호, 2015.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549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299호, 2024.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u>사무국장의 분장사무(제10조제2항 관련)</u>

명 칭	분 장 사 무				
사무국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 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한국교원대학교학칙

```
제정 1985.03.01.
개정 1985.12.27.
개정 1987.03.01.
개정 1987.09.01.
개정 1988 08 22
개정 1989.03.16.
개정 1990.07.18.
개정 1992.03.12.
개정 1992.08.11.(규정 제 96호)
개정 1995.04.13.(규정 제119호)
개정 1997.01.15.(규정 제141호)
개정 1997.03.11.(규정 제142호)
개정 1997.12.22.
개정 1998.06.01.(규정 제161호)
개정 2000.10.12.(규정 제176호)
개정 2001.09.01.(규정 제187호)
개정 2001.12.05.(규정 제224호)
개정 2002.03.01.(규정 제225호)
개정 2002.06.26.(규정 제229호)
개정 2002.11.29.(규정 제238호)
개정 2003.10.01.(규정 제248호)
개정 2004.02.20.(규정 제258호)
개정 2005.03.15.(규정 제271호)
개정 2006.03.01.(규정 제312호)
개정 2006.09.20.(규정 제314호)
개정 2006.11.28.(규정 제325호)
개정 2007.09.01.(규정 제334호)
개정 2007.12.11.(규정 제346호)
개정 2008.03.01.(규정 제348호)
개정 2008.07.31.(규정 제355호)
개정 2008.09.17.(규정 제368호)
개정 2008.11.26.(규정 제371호)
개정 2009.01.07.(규정 제372호)
개정 2009.03.01.(규정 제373호)
개정 2009.05.01.(규정 제391호)
개정 2009.08.01.(규정 제395호)
개정 2009.12.08.(규정 제401호)
개정 2010.02.26.(규정 제413호)
개정 2010.08.06.(규정 제424호)
개정 2010.12.21.(규정 제428호)
개정 2011.02.28.(규정 제432호)
개정 2011.04.07.(규정 제437호)
```

```
개정 2011.12.12.(규정 제450호)
개정 2012.05.01.(규정 제456호)
개정 2012.06.08.(규정 제467호)
개정 2012.07.22.(규정 제471호)
개정 2012.10.05.(규정 제475호)
개정 2012.10.11.(규정 제478호)
개정 2012.12.11.(규정 제489호)
개정 2013.01.22.(규정 제493호)
개정 2013.03.01.(규정 제498호)
개정 2013.04.11.(규정 제505호)
개정 2013.06.04.(규정 제511호)
개정 2013.09.06.(규정 제525호)
개정 2014.01.28.(규정 제534호)
개정 2014.05.20.(규정 제541호)
개정 2014.06.03.(규정 제544호)
개정 2015.02.25.(규정 제564호)
개정 2015.03.18.(규정 제570호)
개정 2015.06.05.(규정 제574호)
개정 2016.02.18.(규정 제594호)
개정 2016.04.01.(규정 제596호)
개정 2016.06.02.(규정 제600호)
개정 2016.10.07.(규정 제609호)
개정 2016.12.05.(규정 제617호)
개정 2017.01.25.(규정 제619호)
개정 2017.06.29.(규정 제633호)
개정 2018.03.01.(규정 제646호)
개정 2019.03.01.(규정 제667호)
개정 2019.06.10.(규정 제675호)
개정 2019.06.26.(규정 제679호)
개정 2020.02.26.(규정 제698호)
개정 2020.04.07.(규정 제703호)
개정 2020.09.10.(규정 제712호)
개정 2020.11.18.(규정 제718호)
개정 2021.02.23.(규정 제722호)
개정 2021.03.31.(규정 제732호)
개정 2021.08.20.(규정 제742호)
개정 2022.01.06.(규정 제754호)
개정 2022.02.18.(규정 제758호)
개정 2022.05.18.(규정 제772호)
개정 2022.06.30.(규정 제778호)
개정 2022.12. 1.(규정 제785호)
개정 2023.05.04.(규정 제796호)
개정 2023.05.15.(규정 제799호)
개정 2023.07.17.(규정 제806호)
개정 2023.11.15.(규정 제818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한국교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는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할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고, 현직 교원에 대한 계속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원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로서,이 학칙은 본교의 교육 조직과 학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 제2조(운영의 원칙) 본교에 설치된 단과대학, 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는 상호 유기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직 전 교육과 현직 교육 및 교육 연구의 연계 강화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노 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 **제3조(전임교원)** ① 전임교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말한다.〈개정 2014, 1, 28.〉
 - ② 전임교원은 교수부에 소속한다.〈개정 2014. 1. 28.〉
 - ③ 제2항에 따라 소속된 전임교원은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제4대학, 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등부속시설에 겸무 할 수 있다.<개정 2009. 1. 7., 2014. 1. 28.>
 - ④ 전임 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강의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 6. 4., 개정 2014. 1. 28.〉
 - ⑤ 제1항의 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4. 1. 28.〉
- 제4조(학생의 소속) 본교의 학생(부설학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전공 학과에 소속되며, 그 전공 학과를 통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소속 된다.
- **제5조(강사 등)** ① 본교에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9. 6. 10.〉
 - ② 제1항의 강사 등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 28., 2019. 6. 10.〉

- 제5조의2(평가) ① 총장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 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교육·연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 3, 1.〉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 3. 1.〉

제2장 교육 조직

- 제6조(대학 및 대학원) 본교에는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제4대학, 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을 둔다.〈개정 2009. 1. 7.〉
- **제7조(대학의 학과)** 각 대학별 설치학과 및 학과별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 12. 11, 2009. 1. 7, 2009. 3. 1, 2009. 12. 8., 2010. 12. 21., 2019. 3. 1., 2019. 6. 10., 2023. 7. 17., 2024. 2. 29.〉
- 제8조(대학장 등) ① 각 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 보한다.
 - ② 각 대학의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경보한다.
 - ③ 초등교육과에 심화군을 둘 수 있으며, 심화군 전공주임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9. 3. 1.〉
 - ④ 학장은 총장의, 학과장은 단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8, 7, 31., 2019, 3, 1.〉
 - ⑤ 학장은 대학과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간의 연계교육 등 효율적인 학사운 영을 위하여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행정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1.〉
- **제9조(대학원장 등)** ①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② 제8조의 학과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 학과의 교무를 겸무 한다.〈신설 2010. 2. 26.〉
 - ③ 대학원의 학과에 전공을 두고, 각 전공에 전공주임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0. 2. 26.〉
 - ④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교수부) ① 본교 교원의 교수·연구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밑에 교수부를 둔다.
 - ② 교수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교 원을 전공 계열별로 구분하여 지원·관리한다.

제3장 관리 조직

- 제11조(총장) ① 총장은 본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직접선거제로 하고, 선거 방식·절차 및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10.11.. 개정 2019. 6. 10.〉
- **제12조(부총장)** ① 교수부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둔다.〈개정 2019, 3, 1.〉
 - ② 부총장은 교수부장으로 겸보한다.〈개정 2019. 3. 1.〉
- 제13조(부, 처, 국) ① 총장 밑에 교수부를 포함하여 입학학생처·기획처·사무국을 두며, 각 부·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또는 교수로 보한다.〈개정 2019. 3. 1., 2020. 4. 7. 2024. 1. 4.〉
 - ② 각 부·처에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부장 및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부장 및 부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신설 2020. 4. 7.〉
 - ③ 부·처·국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3. 1., 2020. 4, 7.〉
- 제14조(대학원 부원장 등) 교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부원장, 종합교육연수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9. 17, 2012. 5. 1., 2016. 10. 7., 2017. 6. 29., 2018. 3. 1., 2019. 3. 1.〉
 - ② 〈삭제 2012. 5. 1.〉
 - ③ 〈삭제 2012. 5. 1.〉
 - ④ 〈삭제 2018. 3. 1.〉
- **제15조(하부조직)** ①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조직 밑에 다음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3. 1.〉
 - 1. 부·처·국 : 과, 사업단, 센터, 팀
 - 2. 대학·대학원 : 행정실, 팀
 - 3. 산학협력단 : 부
 - 4. 부속시설 : 과, 부, 센터, 행정실
 -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조직설치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9. 3. 1.〉

제3장의2 지원시설〈신설 2012. 5. 1.〉

- **제16조(산학협력단)** ① 본교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한다.)을 두되, 법인으로 한다.〈신설 2008, 9, 17, 2009, 12, 8, 2019, 3, 1.〉
 -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와 학술연구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2009, 12. 8., 2019, 3. 1.〉
 - ③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되, 단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2009. 12. 8., 2019. 3. 1.>
 - ④ 산학협력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08. 9. 17, 2009. 12. 8., 2019. 3. 1.>

제16조의3(입학인재관리본부) 삭제〈2018. 3. 1.〉

- **제16조의4(인재개발본부)** 〈삭제〉 〈신설 2012. 10. 11.〉〈삭제 2016. 6. 2.〉
 - ① 〈삭제〉 〈신설 2012. 10. 11.〉〈삭제 2016. 6. 2.〉
 - ②〈삭제〉〈신설 2012. 5. 1., 개정 2012. 10. 11.〉〈삭제 2016. 6. 2.〉
 - ③ 〈삭제〉 〈신설 2012. 5. 1., 개정 2012. 10. 11.〉〈삭제 2016. 6. 2.〉

제16조의5(국제교류본부) 삭제〈2018. 3. 1.〉

제4장 종합교육연수원과 교육연구원 등<개정 2023.5.15.>

- 제17조(종합교육연수원) ①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자들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교육연수 원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3.5.15.〉
 - ② 종합교육연수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7조의2(영유아교육연수원) ①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교육연수대상자들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연수원을 설치 운영한다.<신설 2023.5.15.>
 - ② 영유아교육연수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5.15.>
- 제18조(교육연구원) ① 대학, 대학원, 연수원 및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가지면서 교과 교육, 교원 교육, 현장 교육 및 교육 정책 등의 연구를 통하여 전국 수준의 실천적 교육 연구의 중추 기관으로서 각 시·도 교육연구원, 민간 연구 단체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자료의 개발·보급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원을 설치 운영한다.

- ② 교육연구원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대학 및 대학원에 설치한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개정 2011. 4. 7.〉
- ③ 교육연구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부속 시설 및 부설 학교

- 제19조(부속 시설) ① 본교에는 부속시설로서 제17조의 종합교육연수원, 제 17조의2의 영유아교육연수원, 제18조의 교육연구원 외에 다음 기관을 둔다.〈개정 2008. 7. 31, 2009. 5. 1, 2009. 8. 1., 2010. 12. 21., 2011. 4. 7., 2012. 5. 1., 2012. 10. 11., 2013. 2. 28., 2013. 4. 11., 2013. 6. 4., 2013. 9. 6., 2018. 3. 1., 2021. 2. 23., 2022. 2. 18., 2022. 5. 18., 2023. 5. 15.〉
 - 1. 도서관
 - 2. 사도교육원
 - 3. 미래교육혁신원
 - 4. 신문방송사
 - 5. 교육정보워
 - 6 교육박물관
 - 7. 삭제〈2023. 5. 15.〉
 - 8. 황새생태연구원
 - 9. 영재교육원
 - 10.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중고등특수학교설립추진단
 - ② 각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학 특성을 살리는 연구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 ③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되,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의 장으로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7, 31, 2009, 5, 1.〉
 - ④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 ⑤ 부속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⑥ 설치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대학 및 대학원에 설치한 연구소와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소로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 2. 26., 2011. 4. 7., 2012. 5. 1.〉

제20조(도서관) ① 도서관의 발전계획수립, 운영위원회, 예산, 시설, 직원,

자료의 기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 3. 1.〉 ② 〈개정 2016. 12. 5., 삭제 2019. 3. 1.〉

제21조(부설 학교) ① 본교에는 다음의 부설 학교를 둔다.

- 1. 부설유치원
- 2. 부설초등학교
- 3. 부설중학교
- 4 부설고등학교
- ② 각 부설 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설 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제6장 교수회

- 제22조(전교교수회의) ① 본교의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교교수회의를 둔다.
 - ② 전교교수회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교수 회원
 - 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
 - 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 7. 22.〉
 - ③ 전교교수회의는 교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전교교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학(원), 학과 및 부속 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건의
 - 2. 학칙 및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중요 사항
 - 3.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4. 삭제〈2008. 3. 1.〉
 - 5. 학생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6. 삭제〈2008. 3. 1.〉
 - 7. 기타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08. 7. 31.>
 - ⑤ 전교교수회의는 제4항을 심의 할 교수회평의회를 두며, 교수회평의회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10. 7.〉
- 제23조(단과대학교수회) ① 각 대학은 해당 대학에 위임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해당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교수 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 7. 22.〉
 -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교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6. 10. 7.〉

- **제24조(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에 고등교육법 제19조2에 따라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개정 2016. 10. 7., 2019. 3. 1.〉
 -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교무회의

- 제25조(목적) 본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 회의를 둔다.
- 제26조(구성) ① 교무회의는 총장, 부총장, 교수부장, 대학원장, 제1대학장, 제2 대학장, 제3대학장, 제4대학장,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종합교육연수원장, 교육연구원장, 도서관장, 사도교육원장, 미래교육혁신원장 및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7. 31, 2008. 9. 17, 2009. 12. 8., 2012. 5. 1., 2013. 1. 22., 2016. 4. 1., 2016. 6. 2., 2018. 3. 1., 2021. 2. 23.〉② 교무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교무회의의 간사는 사무국 총무과장이 된다.
 - ④ 교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교직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심의 사항)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원), 학과 및 부속 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2.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4.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 5. 학생 지도,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6. 연구비, 장학금 등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7. 주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제9장 위원회

- **제28조(위원회)** ① 본교에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전기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 3, 1.〉
 - 1. 삭제〈2008. 3. 1.〉
 - 2. 삭제〈2008. 3. 1.〉

- ②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의 개발 ·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신설 2008. 3. 1.〉
- ③ 본교에서 징수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2. 25.〉
- ④ 본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신설 2011. 2. 28.〉
- ⑤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신설 2016, 10, 7.〉
- ⑥ 본교에서 수행하는 동물 대상 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동물 실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 6, 10..〉
- ⑦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3. 1., 개정 2010. 12. 21., 2016. 10. 7., 2019. 6. 10.〉
- 제29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본교에 대학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수부장,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8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여성 교원의 비율을 2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9. 17., 2012. 5. 1., 2018. 3. 1.〉
 -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30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 제31조(수업 일수) ① 수업 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0. 4. 7.〉
 - ② 계절수업 등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과목별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4. 7.〉
- **제31조의2(학점 당 이수시간)** ①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학점 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0. 4. 7.〉
 - ② 제31조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한 경우에도 보강, 원격수업 또는 과제

물 활용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0. 4. 7.>

- 제32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과 하기· 동기 휴가 기간으로 한다.
 - ② 휴업일은 필요에 따라서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③ 휴업일에도 필요에 따라 과제 등을 과할 수 있다.
- 제33조(임시 휴업) 입학시험,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비상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11장 입학, 편입학 및 등록<개정 2019. 3. 1.>

- 제34조(입학 시기) 입학의 허가는 매 학기 초 20일 이내에 한다.
- **제35조(입학 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 7, 31,, 2019, 6, 26.〉
- 제36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 3.1.〉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개정 2008. 3. 1., 2022. 12. 1.〉
 -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개정 2008. 3. 1., 2022. 12. 1., 2023. 5. 4.〉
 - 2. 재학연한을 초과한 사람〈신설 2008. 3. 1.〉〈개정 2022. 12. 1. 2023. 5. 4.〉
 - 3. 자퇴 사유로 무기정학이 해제된 사람〈신설 2023. 5. 4.〉
 -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3. 1.〉
- 제37조(편입학) ① 일반편입학(정원 내)으로 제3학년에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입학 대상 직전 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 ② 학사편입학(정원 외)으로 제3학년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 ③ 편입학한 자는 당해 학과에서 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제외하고 잔여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전적 대학에서 징계 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⑤ 편입학생의 선발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전과)**〈삭제 2019. 3. 1.〉
- 제39조(지원 절차) 본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1.〉
- 제40조(입학 전형) 신입생의 선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0조의2(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및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8.〉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따로 정한다. 〈신설 2015. 3. 18.〉
- 제4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 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2조(입학 허가) ① 입학 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
 - ②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을 원하는 사람, 한국학교·외국고 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은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6. 26.〉
- 제42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신설 2021. 3. 31.〉
 -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3.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 4.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 **제43조(입학 절차)** ① 입학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개정 2014. 6. 3>
 - ②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은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3〉

- ③ 〈신설 2014. 6. 3〉 〈삭제 2021. 3. 31.〉
- 제44조(보증인) ① 〈삭제 2014. 6. 3〉
 - ② 〈삭제 2014. 6. 3〉
- 제45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12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 학점 및 졸업<개정 2008, 3, 1,>

- **제46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편입학생은 2년)으로 한다.
- **제47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3, 1,, 2009, 3, 1,〉
 - ②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1.〉
 - ③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개정 2008. 3. 1.〉
- 제48조(교과목 구분) ① 본교의 교육 과정 교과목은 교양 과목, 교직 과목, 전공과목 및 사도교육원 교육(이하 "사도교육"이라 한다)으로 하고, 교과목의 구분은 교육 과정에 의한다.〈개정 2008. 7. 31, 2009. 3. 1., 2018. 3. 1., 2021. 2. 23.〉
 - ② 〈삭제〉 〈개정 2009. 3. 1.〉
 - ③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한 학기 30시간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 제49조(교육 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은 교양, 교직, 전공, 자유선택, 사도교육으로 편성하되, 교원자격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영역 및 이수학점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12, 11.〉
 - ② 〈삭제〉 〈개정 2012. 12. 11.〉
 - ③ 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 함양을 위하여 사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개정 2008. 7. 31.〉
 - ④ 편입학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재학 연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 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 ⑤ 〈삭제〉 〈개정 2009. 3. 1.〉
- **제50조(교육 과정의 이수)** ① 학생은 제49조에 따라 편성된 영역별 이수학 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1.〉
 - ② 〈삭제〉 〈개정 2009. 3. 1., 2012. 12. 11.〉
 - ③ 〈삭제〉 〈개정 2012. 12. 11.〉

- ④ 학생은 주전공(입학한 학과)외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전공(연계 전공을 포함하여 이하"복수전공"이라 한다.)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9조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의 복수전공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 2009. 3. 1., 2012. 12. 11.〉
- ⑤ 신입학생은 1·2학년(2년) 동안, 편입학생은 3학년(1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도교육원의 기숙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매학기 사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관에 입사가 불가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정한다.〈개정 2008. 7. 31, 2009. 3. 1., 2018. 3. 1., 2021. 2. 23.〉

제51조 〈삭제〉 〈2008. 3. 1.〉

- 제52조(수업 시간표) 매 학기 수업 시간표는 개강전에 결정하여 발표한다.
- 제53조(교과목 번호)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목 번호를 부여하되 교과목 번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4조(수강 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에 대하여 소속 학과장의 수강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한다.
 - ② 전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수강을 하지 못한다.
 - ③ 승인된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학기 도중에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④ 수강 신청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5조(수강 신청 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3학점 이상 21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B · 등급 이상인 경 우 24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6. 8.〉
 - ② 수강 신청 상한 학점에는 군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제외한다.〈개정 2020. 2. 26.〉
 - ③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 선택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제56조(학사 과정의 학점별 학년) 학사 과정의 학점에 의한 학년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1학년은 35학점 이하, 제2학년은 36학점 이상 70학점 이하, 제3학년은 71학점 이상 105학점 이하, 제4학년은 106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57조(학년 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고 다음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별지 서식(3)의 학년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1학년의 수료 인정 학점 : 35학점 - 69학점

2학년의 수료 인정 학점 : 70학점 - 104학점

3학년의 수료 인정 학점 : 105학점 - 139학점

제58조(졸업 논문) ① 학생은 최종 졸업 학기의 소정 기일까지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 실험 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 종합 시험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졸업 논문(실험 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 종합 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9조(졸업 학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본교에서 4년(편입학생은 2년)이 상 재학하고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0조 제4항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별도 교육과정에 편성된 복수 전공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 2009. 3. 1., 2012. 12. 11.〉
- 제60조(학사학위취득 및 수료의 유예) ①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학사학 위취득 및 수료 요건이 충족된 자가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를 원하는 경우 총장은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개 학기까지 학사학위취 득 및 수료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8, 3, 1, 2012, 10, 5, 2019, 3, 1,〉
 - ②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0. 5., 개정 2019. 3. 1.〉
 - ③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자는 재학생에 준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단, 미등록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1.〉
- 제61조(졸업과 학위) ① 소정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된 자로서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1)의 졸업 증서에 의거 교육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학위증서에는 반드시 전공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반도체학과의 경우 공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 3. 1., 2012. 10. 5., 2024. 2. .〉
 - ②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졸업사정에서 수료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별지(2)의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2. 10. 5.〉
 - ③ 졸업생 또는 수료생이 제1항과 제2항의 졸업 및 수료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 및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6. 5.〉
- **제62조(시험과 결석)** ①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시험을 시행한다. 다만, 중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해당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과 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 시험은 정기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 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2조의 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학칙 제62조 및 제63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졸업 직전 학기까지의 과정을 이수하고 조기 취업한 자의 수업 및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 1. 25.〉
- 제63조(성적 평가) ① 학업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 성적, 출석 상황, 연구보고서, 평소 학습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등급	실 점	평 점	성적등급	실 점	평 점
A ⁺	97 - 100	4.5	C ⁺	77 - 79	2.4
Αo	94 - 96	4.1	СО	74 - 76	2.1
A^{-}	90 - 93	3.8	C ⁻	70 - 73	1.8
B^{+}	87 - 89	3.4	D^{+}	67 - 69	1.4
ВО	84 - 86	3.1	Do	64 - 66	1.1
B ⁻	80 - 83	2.8	D_{-}	60 - 63	0.8
			F	60점 미만	0.0

- ② 학업 성적은 D-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영역별 성적 평점 평균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1.〉
- 1. 전체 : 2.1 이상〈개정 2012. 12. 11.〉
- 2. 교직과정 : 2.5 이상〈개정 2012. 12. 11.〉
- 3. 전공, 복수전공 과정 : 각각 2.1 이상(개정 2015. 6. 5.)
- 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 승인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 등급으로 한다.
- ④ 학생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이수 한 교과목 성적은 취득학점 및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 3. 1., 2010. 2. 26., 2012. 12. 11.〉
- ⑤ 교과목 폐지로 인하여 재이수가 불가능한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 **제64조(성적 경고)** ① 학사 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경고를 한다.
 - ② 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개정 2009. 3. 1., 2022. 12. 1.> 제65조(휴학) ① 학생이 수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학과장을 거쳐 총 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3. 1., 2010. 2. 26., 2012. 12. 11. 〉
- 1. 일반휴학 : 특별휴학을 제외한 휴학〈개정 2012, 12, 11.〉
- 2. 특별휴학 :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2. 12. 11.>
 - 가. 입대휴학 : 군복무를 위한 휴학〈개정 2012. 12. 11.〉
 - 나.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개정 2012, 12, 11.)
 - 다. 임신휴학 : 임신에 따른 휴학(개정 2012. 12. 11.)
 - 라. 출산·육아휴학 : 출산 및 육아(3년)를 위한 휴학〈개정 2012. 12. 11.〉
 - 마. 기타휴학 : 가목에서 라목외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휴학(개정 2012. 12. 11.)
- ③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한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신설 2010. 2. 26.〉〈개정 2012. 12. 11.〉
- 제65조의2(휴학기간 및 신청) ① 휴학기간은 재학 기간을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12. 11.〉
 - ② 휴학은 당해학기 휴학신청 기간 및 수업일수 4분의 1선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휴학은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1.〉
 - ③ 휴학의 기간,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 12. 11.〉
- 제66조(복학) ① 휴학한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 ②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휴학 사유가 종료된 경우라도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 **제6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개정 2022, 12, 1.〉
- **제6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한다.
 기지 2008. 3.
 - 1. 휴학 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해도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 12. 11.〉
 - 2. 삭제〈2008. 3. 1.〉
 - 3. 등록 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2. 12. 11.〉

- 4. 재학연한을 초과한 사람<개정 2008. 3. 1., 2012. 12. 11.>
- 5.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사람(개정 2008, 3, 1, 2012, 6, 8, 2012, 12, 11.)
- 6.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사람〈개정 2008. 3. 1., 2012. 12. 11.〉
- 7. 동조 제5호로 제적된 후 재입학 하여 성적경고(1회)를 받은 사람〈신설 2008. 3. 1.〉
 1.〉
 가정 2012. 12. 11.〉
- 8. 제76조에 따라 제적 처분을 받은 사람(신설 2022, 12, 1.)
- ② 삭제〈2008. 3. 1.〉

제14장 학생자치활동

- 제69조(학생 자치 단체)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신장하며, 본교의 교육 목적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 자치 단체를 구성한다.
 - ② 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0조(학생 지도) 학생들이 학업 및 학교 생활에 있어서 지도 또는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도 교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1조(학생 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수업, 연구, 학사 운영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학생 활동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0. 2. 26.〉 **제72조(간행물)** 학생 또는 학생 단체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포상과 징계

- 제73조(포상 대상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선행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제74조(학년 우등생)** 학생으로서 매학년 성적의 평점 평균이 3.8(A₋) 이상인 자는 학년 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5조(졸업 우등생) 졸업 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 게는 졸업시 총장이 이를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 제76조(징계) ① 총장 또는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 또는 대학(원)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 2020. 9. 10., 2022. 12. 1.〉

- 1.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람(개정 2022. 12. 1.)
- 2.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개정 2022, 12, 1.)
- 3.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개정 2022, 12, 1.〉
- 4.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사람〈신설 2018. 3. 1., 개정 2020. 9. 10., 개정 2022. 1. 6., 2022. 12. 1.〉
-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사람(개정 2022, 12, 1.)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1.〉
- ③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등록금<개정 2010. 12. 21.>

- 제77조(등록금 납부 의무)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 이외의 학생으로 납기일 전에 휴학한 자는 휴학 기간에 한하여 그 학기부터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1.〉②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경제 사정으로 등록금의 납부가 곤란한 자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1.〉
- 제78조(학비보조등) 본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2015. 2. 25.>
- 제79조(복학자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자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1.〉
- 제80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0. 12. 21., 2021. 8. 20.〉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 된 경우〈개정 2010. 12. 21.〉
 -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0. 12. 21.〉
 -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신설 2021. 8.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학생

- 의 반환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신설 2021, 8, 20.〉
- ③ 등록금의 반환 사유 발생일별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2, 21.〉
-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개정 2010, 12, 21.)
-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개정 2010. 12. 21.〉
-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개정 2010. 12. 21.〉
-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10. 12. 21.〉
-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개정 2010. 12. 21.〉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원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계절제 전공 등록금 의 반화사유 발생일별 반화금액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1.15〉

제17장 장학금

- 제81조(장학금) ① 본교 학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금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8장 사도 교육

- 제82조(사도교육) 학교 내에서 공동 생활을 통하여 사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인화 단결,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여 교사로서의 인격 도야와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교직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의 선도자로서의 기틀을 닦기 위하여 사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1.〉
- 제83조(생활관 입사 및 숙식비) ① 학생이 1, 2학년(2년)동안 의무적으로 생활관에 입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총장은 교무회의를 거쳐 이를 유보시킬 수 있다.〈개정 2008. 7. 31, 2009. 3. 1.〉
 - ② 전항에 의하여 유보가 결정된 학생은 수업연한 내에 사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 2008, 7, 31.〉
 - ③ 생활관에 입사하여 사도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식비를 2년 동안 국고에서 지급한다. 단, 제1항에 의하여 생활관 입사가 유보된 학생이

사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숙식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되, 사도교육을 미이수한 학생이 재 이수할 경우에는 숙식비를 개인이 부담한다.〈개정 2008. 7. 31, 2009. 3. 1.〉

- ④ 사도교육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7. 31.〉
- **제84조(피복 지급)** 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관에 입사하여 사도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1, 2009. 3. 1.〉
 - ② 전항의 피복의 종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장 공개 강좌

- 제85조(공개 강좌) ① 본교는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사회인에게 교양, 학술 또는 직업과 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수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 강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장 수업 등

- 제86조(수업 등)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각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 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제87조 삭제〈2022. 6. 30〉

제21장 타 대학 등 수학, 국내 타 대학 및 외국 대학 특별생 등(개정 2010. 2, 26.)

- 제88조(재학생 타 대학 수학) ① 본교의 학생이 국내외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 ② 전항의 수학 기간은 본교의 재학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재학생의 국내·외 타 대학 수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9조(타 대학 등 수학 학점인정)**<개정 2010. 2. 26.〉① 제88조의 경우 국 내·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3. 1.〉.
 - ②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 수업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2. 26.〉〈개정 2010. 8. 6., 2016. 2. 18.〉
 - ③ 본교 학생이 국내·외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수 있다. 〈개정 2018. 3. 1.〉.
- 제90조(국내 타 대학 및 외국 대학 특별생) ① 본교에는 국내 타 대학 및 외국 대학 특별생을 둘 수 있다.
 - ② 국내 타 대학 및 외국 대학 특별생의 자격, 등록, 수업 및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1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①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에게는 본교에서 정한 지원 자격 및 학력을 심사·평가한 후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 7. 31.〉
 - ②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7, 31.)

제22장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신설 2009. 3. 1.〉

- 제92조(학생군사 교육과정 설치) ① 본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 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9. 3. 1.〉
 - ②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 3. 1.〉

부칙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8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8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8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8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2. (198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 조치) 198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2년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40조(교육 과정의 편성)제2항, 제41조의 2(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45조(이수학점), 제46조(학사 과정의 학점별 학년), 제47조(학년 수료증), 제49조(졸업 학점)는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규정) 제40조, 제41조의 2 및 제45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규정) 1. 제40조, 제41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이 학칙 시행 당시 직전 학칙 부칙 제2호의 규 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부칙(2000. 10. 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9. 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한국교원대학교교수부규정, 한국교원대학교학생 생활연구소규정, 한국교원대학교보건진료소규정, 한국교원대학교교육과정 연구소규정, 한국교원대학교새마을연구소규정, 한국교원대학교부설교과교 육공동연구소규정, 한국교원대학교학생회관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① 이 학칙 시행 당시의 다른 학칙 및 규정 중 "부속기관"은 "부속시설"로, "부속학교"는 "부설학교"로, "학생기숙사"는 "생활관"으로, "기획담당관, 연구지원담당관"은 "기획연구지원과(장)"으로, "수업과(장), 학적과(장)"은 "학사관리과(장)"으로, "장학담당관, 학생과(장)"은 "학생지원과(장)"으로, "후생과(장)"은 "학생복지과(장)"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학칙 및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칙에 갈음하여 이 학칙 또는 이 학칙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12. 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6. 26.)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5항, 제61조,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11. 29.)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제1항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2. 2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50조 3항 및 제59조의 단서 규정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3.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 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9.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11.)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개정 전에 부전공을 이수중인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08. 7. 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9. 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① 이 학칙 시행 당시의 다른 학칙 및 규정 중 "기획·연구처"는 "기획처"로, "기획홍보과"는 "기획평가과" 또는 "대외협

력과"로, "연구지원과"는 "산학협력단"으로, "교무관리과"는 "학사관리과" 로, "기획·연구처장"은 "기획처장"으로, "기획홍보과장"은 "기획평가과장" 또는 "대외협력과장"으로, "교무관리과장"은 "학사관리과장"으로 본다.

- ② 한국교원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 중 "기획·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학칙 및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칙에 갈음하여 이 학칙 또는 이 학칙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371호, 2008. 11.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72호, 2009, 1, 7,)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73호, 2009, 3, 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제48조, 제50조,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규정 제391호. 2009. 5.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95호, 2009. 8.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01호, 2009, 12, 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1의 개정내용과 제26조제1항은 각 각 2010년 3월 1일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13호, 2010, 2, 26.)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424호, 2010. 8. 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28호, 2010. 12. 21.)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은 2011학년도 등록금 책정시부터 적용 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학칙, 학사관리 규정 중 "납입금"은 "등록금"으로, "납입 고지서"는 "등록금고지서"로 한다. 다만, 학사관리 규정 제46조의 "납입금"은 "수강료"로 한다.

부칙(규정 제432호, 2011. 2.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37호, 2011. 4. 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50호, 2011, 12, 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56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학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 제101조, 제115조 중 "학생처"를 "교학처"로 하고, 제104조 표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② 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③ 부설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④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5조 제2항 중 "교수부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⑤ 학생활동상담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학 생복지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 ⑥ 발전기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2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⑦ 시설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⑧ 일반직 등 성과급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학생복지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 ⑨ 연수기숙사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생복지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 ① 성문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하고, "학생복지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 ①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② 제규정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학생복지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 ③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④ 교원문화관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생복지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 ⑤ 교수회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학생복지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 ① 주택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①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 교원 및 조교 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⑩ 교원 겸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총장, 대학원장, 대학장"을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20 교수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② 연구년교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②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학생복지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 ② 장학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하고, 제7조, 제8조 중 "학생처"를 "교학처"로 한다.

② 소비조합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로 하고, "학생복지과장"을 "학생 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8조제2항 중 "학생처 학생복지과"를 "교학처 학 생지원과"로 한다.

- ② 발전기금재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② 한국교원대학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학생복지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규정 제467호, 2012. 6. 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71호, 2012. 7. 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 ②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학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②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③ 교육연구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④ 교육박물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⑤ 사도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⑥ 대학(원)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⑦ 성문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⑧ 주택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⑨ 교원 및 조교 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임강사"를 삭제하고, 제8조 중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하고, 제14조의2제2항제3호 "전임강사 : 2년"을 삭제하며 별표1 중 "전임강사→조교수"를 삭제한다.

- ① 겸임교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제3조제1항제4호 "겸임 전임강사 : 3년 이상"을 삭제한다.
- ① 교수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② 초빙교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임강사대우"를 삭제한다.

부칙(규정 제475호, 2012. 10. 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0조는 2012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478호, 2012. 10. 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89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4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제4항, 제59조, 제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493호, 2013. 1. 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98호. 2013. 3.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05호, 2013 4 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11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글로벌언어교육원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규정 제525호, 2013, 9, 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34호, 2014, 1,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41호, 2014. 5. 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44호, 2014, 6,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64호, 2015, 2, 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70호, 2015, 3, 18.)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63조 제2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574호, 2015, 6, 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94호, 2016. 2. 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96호, 2016. 4.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00호, 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교원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입학관리본부장"을 "입학인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입학관리과장"을 "입학인재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한국교원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입학관리본부장, 인재개발본부장"을 "입학인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규정 제609호, 2016.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17호, 2016.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19호, 2017.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33호, 201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46호, 2018.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 중 "사도교육원"을 각각 "사도교양교육원"으로 한다.

제78조 중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육원규정"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양 교육원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 제101조 및 제115조제1항 중 "교학처"를 각각 "입학학생처"로 한다.

제104조 표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②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③ 한국교원대학교 신문방송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④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각각 "교수부장"으로 한다.
- ⑤ 한국교원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입학인재관리본부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하고, "교학처장"을 "기획처장"으로 한다.
- ⑥ 한국교원대학교 발전기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⑦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⑧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⑨ 한국교원대학교 성문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학처"를 "입학학생처"로 한다.

제8조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⑩ 한국교원대학교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① 한국교원대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학처"를 "입학학생처"로 하고,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② 한국교원대학교 주택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③ 한국교원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④ 한국교원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⑤ 한국교원대학교 자체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교학처장"을 각각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⑥ 한국교원대학교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① 한국교원대학교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별표] 중 "사도교육원"을 "사도교양교육원"으로 한다.

-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 겸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② 한국교원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본교 교무위원(총장, 부총장, 교수부장, 대학(원)장, 교학 처장, 기획처장, 종합교육연수원장, 교육연구원장, 도서관장, 사도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입학인재관리본부장)"를 "본교 교무위원(총장, 부총장, 교수 부장, 대학(원)장,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종합교육연수원장, 교육연구원 장, 도서관장, 사도교양교육원장 및 산학협력단장)"로 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4조제3호 중 "교학처장"을 각각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한국교원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② 한국교원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② 한국교원대학교 장학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각각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학처"를 "입학학생처"로 한다.

②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도교육원장"을 "사도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학처"를 "입학학생처"로 한다.

- ② 재단법인한국교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 26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수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학처장, 교수부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입학인재관리본 부장, 교육연구원장, 사도교육원장, 교육정보원장"을 "교수부장, 입학학생 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교육연구원장, 사도교양교육원장 및 교육정보원 장"으로 한다.

부칙(규정 제667호, 2019. 3.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0조는 2018학년도 전기 졸업(수료) 유예를 승인 받은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75호, 2019. 6. 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79호, 개정 2019. 6.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98호, 개정 2020. 2.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03호, 개정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개정된 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시간은 2020 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712호, 제정 2020, 9,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조직 설치 규정」에 성평등센터 가 신설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접수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모든 처리는 종전의 「한국교원대학교 성문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한국교원대학교 성문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 은 폐지한다.
-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 중 "「한국교원대학교 성 문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한국교원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부칙(규정 제718호, 개정 2020. 11.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제1학기 교과목 신설 시 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722호, 개정 2021. 2.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교원대학교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별표] 중 "사도교양교육원"을 "사도교육원"으로 한다.

②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도교양교육원"을 "교육연구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도교양교육원장"을 "교육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도교양교육원장"을 "사도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한국교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도교양교육원장"을 "사도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규정 제732호, 개정 2021, 3, 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42호, 개정 2021. 8. 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54호, 개정 2022. 1. 6.)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학칙 개정)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4호 중 "「한국교원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제18조"를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부칙(규정 758호, 2022. 2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19조제1항제10호의 개정학칙은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개교시까지 유지·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규정 제77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78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85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96호, 2023. 5.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99호, 2023. 5.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06호, 2023. 7. 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18호, 2023. 11.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21호, 2024. 1.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30호, 2024. 2.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4. 5. 20., 개정 2016. 2. 18., 개정 2019. 3. 1., 2019. 6. 10., 2023. 7. 17., 2024. 2. 28.>

학생 정원 현황

단과대학	계열 및 학과	입학정원			
	게일 못 막다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제1대학		148	148	148	148
	교육학계	148	148	148	148
	교 육학 과	9	9	9	9
	유 아 교육과	19	19	19	19
	초 등 교육과	111	111	111	111
	특 수 교육과	9	9	9	9
제2대학		162	162	161	161
	어문교육계	85	85	85	85
	국 어 교육과	34	34	34	34
	영 어 교육과	24	24	24	24
	독 어 교육과	9	9	9	9
	불 어 교육과	9	9	9	9
	중 국 어 교육과	9	9	9	9
	인문사회교육계	77	77	76	76
	윤 리 교육과	20	20	19	19
	일반사회 교육과	19	19	19	19
	지 리 교육과	19	19	19	19
	역 사 교육과	19	19	19	19
제3대학		179	179	180	180
	이학교육계	140	140	140	140
	수 학 교육과	24	24	24	24
	물 리 교육과	19	19	20	20
	화 학 교육과	20	20	19	19
	생 물 교육과	19	19	19	19
	지구과학 교육과	20	20	20	20
	가 정 교육과	19	19	19	19
	환 경 교육과	19	19	19	19
	공학교육계	39	39	40	40
	기 술 교육과	20	20	20	20
	컴 퓨 터 교육과	19	19	20	20
	공학계				
	반도체학 과	0	0		
-기 4 기 국 기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	F.7	F.7	F.7	F.7
제4대학	세케노크스케	57	57	57	57
	예·체능교육계	57	57	57	57
	음 악 교육과	19	19	19	19
	미 술 교육과	19	19	19	19
	체 육 교육과	19	19	19	19
	총 계	546	546	546	546

[※] 학과별 학생 입학정원에 변경이 없는 경우 별표 안의 4개 학년도는 각각 다음 학년도로 갱 신된다.

제 호

졸 업 증 서

성 명 〇 〇 〇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 제 0 대학 00 교육과(00교육 부전공)와 제 0 대학 00 교육과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교육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교원대학교 제 대학장 O 아박사 O O O 한국교원대학교 제 대학장 O 아박사 O O O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 ○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밑줄 친 부분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소속 대학이 전공의 소속대학과 다를 경우 표기 방법임.

별지 서식(2)

제 호

수 료 증 서

성명

19 년 월 생

위 사람은 본교 제 대학 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 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한국교원대학교 제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별지 서식(3)

제 호

학 년 수 료 증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제 대학 과에 20 년 월 일에 입학하여 20 년 월 일까지 제 학년 수료에 상당하는 학점을취득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한국 교원 대학교 제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수료증을 교부함.

20 년 월 일

한국 교원 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
제정
     1985. 3. 1.(규정 제 7호)
개정
     1986. 2.28.(규정 제 29호)
개정
     1989. 2.27.(규정 제 64호)
개정
     1991. 6.19.(규정 제 82호)
개정
     1992. 7.13.(규정 제 95호)
개정
     1993. 7.22.(규정 제101호)
개정
     1995. 7. 1.(규정 제120호)
개정
     1997. 6.23.(규정 제153호)
개정
     1998. 1. 6.(규정 제159호)
개정
     2000.10.12.(규정 제179호)
개정
     2001. 9. 1.(규정 제203호)
개정
     2002. 3. 1.(규정 제227호)
개정
     2002. 6.26.(규정 제232호)
개정
     2003. 1.16.(규정 제239호)
개정
     2003.10. 1.(규정 제252호)
개정
     2004. 2.20.(규정 제259호)
개정
     2004.10. 1.(규정 제265호)
개정
     2005. 9.30.(규정 제275호)
개정
     2006. 9.20.(규정 제315호)
개정
     2007. 3. 9.(규정 제327호)
개정
     2007. 9. 1.(규정 제340호)
개정
     2008. 3. 1.(규정 제349호)
개정
     2008. 7.31.(규정 제359호)
개정
     2009. 3. 1.(규정 제377호)
개정
     2010. 2.26.(규정 제416호)
개정
     2010. 7.26.(규정 제422호)
개정
     2010.12.21.(규정 제429호)
개정
     2011. 8. 3.(규정 제443호)
개정
     2011.11.21.(규정 제445호)
개정
     2011.12.20.(규정 제452호)
개정
     2012. 5. 1.(규정 제456호)
개정
     2012. 5.24.(규정 제466호)
개정
     2012. 7.22.(규정 제471호)
개정
     2012. 8.20.(규정 제474호)
개정
     2012.10. 5.(규정 제476호)
개정
     2012.12.11.(규정 제490호)
개정
     2013. 6. 4.(규정 제512호)
개정
     2013. 7.17.(규정 제519호)
개정
     2013. 9. 5.(규정 제522호)
개정
     2014. 6. 3.(규정 제545호)
개정
     2015. 2.25.(규정 제565호)
```

개정 2015. 5. 5.(규정 제565호) 개정 2015. 6. 5.(규정 제575호) 개정 2016. 5. 9.(규정 제598호) 개정 2017.1.25.(규정 제620호) 개정 2017. 2. 23.(규정 제621호) 개정 2017.6.29.(규정 제631호) 개정 2018. 3. 1.(규정 제646호) 개정 2018. 3. 1.(규정 제647호) 개정 2018. 4.18.(규정 제653호) 개정 2019. 3. 1.(규정 제670호) 개정 2019. 6.10.(규정 제677호) 개정 2019. 8. 7.(규정 제685호) 개정 2019.12.16.(규정 제690호) 개정 2020. 1. 6.(규정 제693호) 개정 2020. 6. 8.(규정 제706호) 개정 2020.10.23.(규정 제717호) 개정 2021. 2.23.(규정 제726호) 개정 2021. 4.21.(규정 제733호) 개정 2022. 1. 6.(규정 제749호) 개정 2022. 12.1.(규정 제786호) 2023. 2.24.(규정 제791호) 개정 개정 2023. 5.31.(규정 제804호) 개정 2023. 9. 8.(규정 제812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 따른 세부 사항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입학과 등록 제1절 입학

- 제3조(학생 모집) 총장은 입학 지원서 접수 개시 30일 전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입학 전형) 입학 전형은 당해 연도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및 입학 전형 계확에 의한다. 제5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입학 전형 계획에서 정한 합격자 사정 원칙에 따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8. 3. 1〉 제6조(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4. 6. 3〉

제2절 등록

- **제7조(등록금)** ① 총장은 학생의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그 납부기일을 학기 개시 20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1.〉
 - ②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당 학기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 다.〈개정 2010, 12, 21., 2013, 6, 4.〉
 - ③ 복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1, 2013, 6, 4.〉
 - ④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징수한다.(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한 면제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15, 2, 25.〉
 - 1. 3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개정 2015. 2. 25.〉
 -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개정 2015. 2. 25.>
 -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15. 2. 25.>
 - 4.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개정 2015. 2. 25.>
- 제8조(신입생 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총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6, 3〉
 - 1. (삭제)<개정 2014. 6. 3>
 - 2. (삭제)<개정 2014. 6. 3>

제3절 학사력

- 제9조(학사력) ① 총장은 학년도 개시 10일 이전에 학사력을 작성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사력에는 학기 구분, 수업 일수, 방학, 공휴일,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중요 행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③ 학사력에 중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과정

제1절 교육 과정 편성

- 제10조(편성 원칙) 교육 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변천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고, 학문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 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제11조(개편) ① 교육 과정 개편안은 각 대학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며 개편 사유와 신·구 교과목의 내용과 교과목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정 개편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단, 교양 교육과정 교과목 개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 6.〉
- **제12조(선수·후수 과목)** 같은 이름의 교과목을 2개 학기 이상 개설하려면 선수 ·후수 과목 순서대로 Ⅰ·Ⅱ로 표시한다.〈개정 2013. 6. 4.〉

제2절 개설 과목

- **제13조(개설 과목)** ① 학년별, 학기별 개설 과목은 학칙 제49조에 따라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개정 2010, 12, 21., 2012, 12, 11.〉
 - ② 교양 과목 및 사도교육원 교육(이하 "사도교육"이라 한다.)은 저학년에서, 전공 과목은 고학년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7. 31., 2018. 3. 1., 2021. 2. 23.〉
- **제14조(자유 선택 과목)** ① 학생은 개설된 교과목 범위에서 자유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 ② 교양 과목, 교직 과목 및 전공과목의 기준 이수 학점을 초과 이수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 8. 3.〉
 - ③ 학생이 복수전공을 포기하면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교과목은 자유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1, 2013, 6, 4,〉
- 제15조(복학자의 교육 과정 적용) 휴학 기간 중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 복학자는 복학할 당시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영역별 이수 기준은 입학 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제3절 교과목 번호

- 제16조(교과목 번호 부여) ① 모든 교과목에는 교과목 번호를 부여한다.
 - ② 교과목 번호는 해당 학과의 의견을 들어 부여한다.
- **제17조(교과목 번호 부여 요령)** ① 교과목 번호는 다음과 같이 6개 단위 □ □□-□□□로 부여한다.⟨개정 2013. 6. 4.⟩
 - 1. 첫째 란 번호는 각 계열을 나타낸다.
 - 2. 둘째 란은 그 계열에서의 분야를 나타낸다.
 - 3. 셋째 란은 그 분야에서의 전공을 나타낸다.
 - 4. 넷째 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양 과목 : 0
 - 나. 학부 전공 과목 : 1, 2, 3, 4
 - 다. 석·박사 과정 과목 : 5, 6, 7, 8<개정 2009. 3. 1.>
 - 5. 다섯째와 여섯째 란은 교과목 고유 번호를 나타낸다.
 - ② 계열별, 분야별, 전공별은 교과목 코드번호는 교육과정에서 정한다.

제4장 복수 전공<개정 2008. 3. 1.>

- 제18조(이수 범위) ① 복수 전공은 계열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학생만이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8. 3. 1〉
 - ② 복수전공 학생 선발인원·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3. 1〉
 - ③ 삭제〈2008. 3. 1〉
- 제19조(이수 학점) ① 이수 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한 편제상 각 영역별 학점을 충족시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초등 교육 심화과정에 대한 사항은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에서 정한대로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 전공 이수자는 초등교육과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복수 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기본 이수 영역 개설 과목은 교육 과정으로 정한다.
- **제20조(이수 신청 등)** ① 1학년 제2학기부터 4학년 제1학기 사이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 2008. 3. 1, 2013. 6. 4.〉
 -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3. 1, 2013. 6. 4.>
 - ③ 삭제〈2008. 3. 1〉
- 제20조의2(교과목 이수 인정)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복수전공 교과목이 있으면 복수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 2013. 6. 4.〉

제5장 수업

제1절 수업 시간표

- 제21조(수업 시간표) ① 학장은 다음 학기에 개설하고자 하는 개설 교과목과 교과목별 수업 시간을 소정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개시전까지 시간표를 확정하여 각 대학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수업 시간) ① 수업 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한다. 다만, 학기당 45시간 강의는 75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과목의 수업 시간은 주중 균형 있게 배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강좌 개설)** 강좌개설의 수강신청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 1. 교양 과목 : 15인 이상〈개정 2009. 3. 1., 2010. 7. 26.〉

- 2.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5인 이상〈개정 2009. 3. 1., 2012. 12. 11.〉
- 3. 전공 과목 : 15인 이상 또는 재학생의 1/2 이상(개정 2009. 3. 1., 2012. 12. 11.)

제2절 수강 신청

- **제24조(수강 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속 학과장의 수강 지도를 받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② 정해진 기간까지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복학자는 수업 일수 1/4경과 이전에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③ 매 학기 사도교육원에 입사하는 학생은 사도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한 것으로 보며,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입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도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08. 7. 31, 2009. 3. 1., 2013. 6. 4., 2018. 3. 1., 2019. 6. 10., 2021. 2. 23.〉

제25조 〈삭제〉

- 제26조(수강 신청 과목 변경) ① 학생이 수강 신청 과목을 변경하려면 정해진 기간에 학과장의 수강 지도를 받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경하고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한국교원대학교 겸임 교원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출석부에서 명단을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9, 8, 7,〉
 - ② 교과목 담당 교원은 변경된 출석부가 배부되면 학생의 수강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 신청 과목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변경하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다.〈개정 2013. 6. 4.〉
- **제27조(수강 지도 및 사전신고)** ① 학과장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수강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2019, 6, 10,〉
 - 1. 이수 학점 및 수강 교과목
 - 2. 수강 신청 방법 및 절차
 - 3. 그 밖의 수강 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개정 2013. 6. 4.〉
 - ②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10.〉
- 제28조(초과 신청 과목의 삭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였으면 자유 선택 과목, 전공 선택 과목, 전공 기본(필수) 과목 및 교양 과목의 순서에 따라 삭제한다.〈개정 2011. 8. 3., 2013. 6. 4.〉
- **제29조 〈삭제〉** 〈개정 2009. 3. 1.〉

- **제30조(성적 무효)** 수강 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면 그 성적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3. 6. 4.〉
- 제31조(미수강 과목 성적 처리) ① 신청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여 성적을 얻지 못하면 그 교과목 성적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13, 6, 4,〉
 - ②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미이수(F)로 처리한다.〈개정 2013. 6. 4., 2018. 3. 1., 2021. 2. 23.〉

제3절 강의 계획서, 출석부

- 제32조(강의 계획서) ① 교원은 담당 교과목의 교육 목표, 주별 강의 계획, 참고 도서, 문헌, 중간시험, 기말 시험, 수시 시험, 과제 부과 사항 등이 명시된 강의 계획을 수강신청 개시 1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사도 교육은 강의 계획서 대신 사도교육 계획서로 갈음한다.〈개정 2008. 7. 31.〉
 - ② 2인 이상의 교원이 담당하는 동일 교과목의 강의 계획은 공동으로 작성하여 게재한다.
 - ③ 강의 담당 교원은 개강 시 수강생에게 강의 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강의는 이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사도교육은 사도교육 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1., 2012. 12. 11.〉
- 제33조(과제 학습) 교과목 담당 교원은 매 학기마다 예·복습을 위한 과제 학습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과제 학습 결과는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4조(수업 실시 보고) ① 교원은 매월 수업 실시 내역을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이 다른 교원은 수업 실시 내역을 해당 교과목이 속하는 학과의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2012, 12, 11, 2013, 6, 4, 2019, 8, 7,〉
 -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수업 실시 내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012, 12, 11.〉
- 제35조(휴·결강과 보강) ① 교원은 학사력에 계획이 없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 강 또는 결강할 때에는 대강(보강)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를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② 학장은 대강(보강) 계획서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국외 연수를 원하는 교원은 대강 또는 보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사전 보강) 교원은 행사, 교육 실습, 그 밖의 사정으로 휴강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 시간표에 명시하여 보충 수업을 실시할수 있다.〈개정 2013, 6, 4.〉

- 제37조(출석부) ① 교원은 매 시간 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석부를 학기말 시험 종료 7일 이내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제38조(수업 일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학생 출결 사항은 매 학기말에 집계 하여 출석 수업 시간 3/4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 "F"등급으로 처리한다.
- 제38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①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으로 인해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7, 1, 25,〉
 - ② 조기취업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출근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38조 및 제53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의 수업, 시험, 성적 평가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수업은 인터넷, 이러닝, 과제부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 **제39조(공결)** ①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개정 2013. 6. 4., 2013. 7. 17., 2019. 3. 1.〉
 -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개정 2013. 7. 17.>
 -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 3.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개정 2013. 7. 17.>
 -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개정 2013. 7. 17., 2020. 1, 6.>
 -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신설 2013. 7. 17.〉
 -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신설2013. 7. 17., 개정 2019. 3. 1., 2020. 1. 6., 2020. 6. 8.〉
 -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신설 2013. 7. 17.〉
 - ②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사유 종료 10일 이내에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2020. 1. 6.〉
 - ③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3. 7. 17.〉

제4절 교원강의 책임 시간 등

- **제40조(교원 강의 책임 시간)** ① 전임 교원의 강의 책임 시간은 매 학년도 30 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연 27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6. 4.〉
 - ② 보직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12. 11., 2013. 6. 4., 2013. 7. 17.〉
 - ③ 총장은 제2항의 보직 교원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임 교원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책임시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3. 7. 17., 2019. 8. 7.〉
 - ④ 보직 등으로 책임시간 감면이 중복되면 적은 책임시간을 적용한다.
 2013. 6. 4., 2013. 7. 17.>
- **제41조** 삭제〈개정 2013. 6. 4., 삭제 2019. 8. 7.〉
- 제42조(특별 강의) 학장이 교양과 전문 기술의 특별 강의를 하려면 제목, 강사의 직, 성명, 일시, 장소, 강의 시간수, 교육 대상, 강사료 등이 기재된 특별 강의 신청서를 강의 7일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 제43조(교외 출강) ① 전임 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려면 사전에 출강 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학과장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 ② 타교 출강은 주당 1일 이내로 한다. 단, 토요일은 예외로 한다.
- 제44조(강사료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료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4조의2(강의평가)** ① 총장은 매학기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 강의평가 와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1.〉〈개정 2018. 4. 18.〉
 - ② 강의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 12. 11.〉

제5절 계절 수업

- **제45조(계절 수업)** ① 학칙 제87조에 따라 하기 및 동기 휴가 중 3주의 범위에 서 계절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 ② 총장은 계절 수업 개시 10일 전까지 개설 과목, 강의 시간, 수강 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을 담은 계절 수업 실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계절 수업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학과장의 수강 지도를 받아 정해진 기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6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④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 취소 및 변경을 할 수 없다.
 - 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지난 후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수업 시간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 시간의 3/4에 미달되면 F등급으로 처리한다.〈개정 2013. 6. 4.〉
- **제46조(수강료)** 계절 수업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수강료을 징수한다.

제47조(강의료 지급) 계절 수업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한다.

제6장 시험, 성적, 학점, 졸업 논문 및 졸업 제1절 시험

- **제48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 6. 4.〉
 - 1. 정기 시험
 - 가. 중간 시험 : 매 학기 중간에 수업한 교과목을 평가하는 시험
 - 나. 학기말 시험 : 매 학기에 수업한 교과목을 학기말에 평가하는 시험
 - 2. 수시 시험 : 정기 시험 외에 매 학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 인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써 과제 학습 평가, 세미나 평가 등을 포함
 - 3. 추가 시험 :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 실시하는 시험
- 제49조(추가 시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추가 시험 인정원(별지 제11호 서식)을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 제50조(시험 부정 행위 처리 기준) 각종 시험의 부정 행위를 막고 학업 성적의 공정한 평가와 면학열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험 중 부정 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험 태도 불량 :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 대하여 는 퇴장 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3. 6. 4.〉
 - 2. 단순한 부정 행위 : 사전에 부정 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 행위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3. 6. 4.〉
 - 3. 계획적인 부정 행위 : 참고 서류, 노트, 쪽지, 휴대폰(모든 전자기기 포함)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 행위는 그 시간 당해 과목을 무효로 하고 징계 한다.〈개정 2013. 6. 4.〉
 - 4. 대리 시험 : 본인이 아닌 학생이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교환하여 시험을 치면 본인과 대리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한다.〈개정 2013, 6, 4.〉
- **제51조(조치)** ① 부정 행위자가 적발되면 감독 교원은 즉시 학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학장은 제50조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절 성적 및 학점

제52조(성적 등급 분류 및 실점 환산표) ① 평점평균을 실점(백분율 점수)으로 환산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2, 26.〉

성적등급	평 점 평 균	실 점	성적등급	평 점 평 균	실 점
A^+	4.50 4.40-4.49 4.30-4.39 4.20-4.29	100.0 99.0-99.9 98.0-98.9 97.0-97.9	C °	2.10-2.19 2.00-2.09 1.90-1.99	76.0-76.9 75.0-75.9 74.0-74.9
А。	4.10-4.19 4.00-4.09 3.90-3.99	96.0-96.9 95.0-95.9 94.0-94.9	C-	1.80-1.89 1.70-1.79 1.60-1.69 1.50-1.59	73.0-73.9 72.0-72.9 71.0-71.9 70.0-70.9
A-	3.80-3.89 3.70-3.79 3.60-3.69 3.50-3.59	93.0-93.9 92.0-92.9 91.0-91.9 90.0-90.9	D^+	1.40-1.49 1.30-1.39 1.20-1.29	69.0-69.9 68.0-68.9 67.0-67.9
B ⁺	3.40-3.49 3.30-3.39 3.20-3.29	89.0-89.9 88.0-88.9 87.0-87.9	D。	1.10-1.19 1.00-1.09 0.90-0.99	66.0-66.9 65.0-65.9 64.0-64.9
В。	3.10-3.19 3.00-3.09 2.90-2.99	86.0-86.9 85.0-85.9 84.0-84.9	D-	0.80-0.89 0.70-0.79 0.60-0.69 0.50-0.59	63.0-63.9 62.0-62.9 61.0-61.9 60.0-60.9
В-	2.80-2.89 2.70-2.79 2.60-2.69 2.50-2.59	83.0-83.9 82.0-82.9 81.0-81.9 80.0-80.9	F	0.00-0.49	60 미만
C ⁺	2.40-2.49 2.30-2.39 2.20-2.29	79.0-79.9 78.0-78.9 77.0-77.9			

② 성적 등급별 분포 비율을 다음 표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수점이하 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다만, 3인 이하의 소수강좌에 대한 평가는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1., 2012. 5. 24., 2012. 12. 11., 2023. 2. 24.〉

А	30% 이내

- ③ 다음의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 1. 교육실습과목
- 2. 군사학과목, 청람인성영역과목<개정 2017. 2. 23.>
- 3. 외국 대학의 교환 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은 교류 협약에 의함<신설 2010. 2. 26.>
- 4. 그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신설 2020. 6. 8.〉
- 제53조(성적 반영 비율) 성적은 다음과 같이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시험, 과제 학습 부과 등 교육 방법상 특수성이 있으면 과목 담당 교원이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 1. 학기말 시험 30%
 - 2. 중간 시험 30%
 - 3. 수시 시험. 예습. 복습. 과제 평가. 세미나 평가 등 30%
 - 4. 출석 10%
 - 5. 사도교육 이수(P)/미이수(F)<개정 2008. 7. 31.>
 - 6. 교육봉사 이수(P)/미이수(F)<개정 2009. 3. 1.>

- 7. 삭제<신설 2013. 6. 4.><개정 2017. 2. 23.>
- 8. 초등교육참관실습 이수(P)/미이수(F)〈신설 2015. 6. 5.〉
- 9.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P)/미이수(F) 〈신설 2016. 5. 9.〉
- 10. 성인지 교육 이수(P)/미이수(F)〈신설 2021. 4. 21.〉
- **제54조(성적 평가 단위)** 성적 평가는 교과목 또는 수강반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12. 12. 11.〉
 - 1. 삭제〈개정 2012. 12. 11.〉
 - 2. 삭제〈개정 2012. 12. 11.〉
 - 3. 삭제<개정 2012. 12. 11.>
- 제55조(성적 입력) ① 교원은 기말시험 종료 10일 이내에 담당 교과목 성적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입력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③ 총장은 성적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성적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개정 2013. 6. 4.〉
 - ④ 성적 처리가 완료된 출석부는 단과대학장이 보관한다.
 - ⑤ 시험 및 성적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한다.〈신설 2019. 6. 10.〉
- **제55조의2(교원 자녀의 성적 부여 및 위반시 조치)** ① 교원이 자녀의 성적을 부여 할 경우, 사전 신고 내역, 성적 산출 근거(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10.〉
 - ② 학과장은 성적의 공정성을 확인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성적을 부여 한 다.〈신설 2019. 6. 10.〉
 -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 제재 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0.〉
- 제56조(성적 정정) ① 확정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개정 2019. 6. 10.〉 ② 교원은 이미 확정된 성적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으면 자료를 첨부한 성적 정정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2019. 6. 10.〉
- 제57조(학점의 인정) 총장은 취득 성적이 제규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취득학점을 인정하고, 학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제58조(평점 평균의 산출) 학업 성적의 총 평점 평균을 산출하려면 평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을 계산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개정 2013. 6. 4., 2021. 4. 21.〉
- 제59조(중복 취득 학점 처리) ① 〈삭제〉 〈개정 2009. 3. 1.〉

- ②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면 이미 취득한 해당 교과목의 기록을 정정하고 취득 학점, 성적 평점 평균을 재산출한다. 〈개정 2009. 3. 1., 2010. 2. 26., 2013. 6. 4.〉
- ③ 사도교육을 미이수(F)한 학생이 재이수하여 이수(P)한 경우 이미 취득한 사도교육의 평가 기록은 정정하여 기록한다.〈개정 2008. 7. 31.〉
- 제60조(성적 경고) 총장은 학칙 제64조에 따라 성적 경고를 받은 학생의 학업 성적표에 "성적 경고"를 표시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성적 경고자 명단을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제3절 졸업 논문 및 졸업

- 제61조(논문 제출 자격) 졸업 논문(졸업 종합 시험, 실험 실습 보고, 실기 발표 포함) 제출 자격은 3학년을 수료한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3. 6. 4., 2017. 6. 29.〉
- 제62조(졸업 논문의 갈음) 학장은 학칙 제58조에 따라 해당 소속학과의 졸업논문을 졸업 종합 시험, 실험 실습 보고, 실기 발표로 갈음하려면 졸업학년도 3월 말일까지 그 실시 계획을 총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 등 계획된 시행일의 30일 이전까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20. 10. 23.〉
- 제63조(졸업 논문 계획) ① 졸업예정자(추가 졸업 예정자 포함)는 3학년말까지 논문의 해당 분야를 신청하고, 학과장은 논문 지도 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2. 12. 11.〉
 - ②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년도 초에 논문 지도를 받아 졸업 논문 제목을 확정하고 졸업 논문 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1.〉
- ③ 논문 지도 교수는 논문 작성 계획 및 방법을 월 2회 이상 지도하여야 한다. **제64조(논문 작성 방법)** 삭제〈개정 2012, 12, 11,〉
- 제65조(논문 제출 시기)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12월(후기 졸업예정자는 7월) 말일까지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1.〉
- **제66조(논문의 심사)** ① 제출된 논문은 논문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3명의 교원이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2., 2013. 6. 4.〉
 - ②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학장이 정한다.
 - ③ 논문의 심사는 논문 제출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학장은 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④ 논문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판정 기준을 단과 대학 해당 학과에서 정한다.
- ⑤ 논문심사에 불합격하면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6. 4.〉
- 제67조(졸업 종합 시험) ① 졸업 종합 시험은 전공 과목을 균형 있게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② 학장은 졸업 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졸업 종합 시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졸업 종합 시험의 시기는 해당 학과장이 정하되, 최종 학기말 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말일(후기 졸업 예정자는 7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1.〉
- 제68조(실험 실습 보고 및 실기 발표) 실험 실습 보고 및 실기 발표에 따른 지도 교수 배정, 심사 등은 학장이 정하되 결과 보고는 졸업 종합 시험에 준한다.
- 제69조(논문 불합격자 구제) 졸업 논문(졸업 종합 시험,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포함) 불합격자는 수료 후 4년 이내 재 제출(졸업 종합 시험, 실험 실습 보고, 실기 발표 포함) 할 수 있다. 다만, 4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과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에 의해 재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3. 1., 2017. 6. 29., 2019. 12. 16.〉
- 제69조의2(졸업 및 학위수여) ① 삭제<개정 2008. 3. 1, 2009. 3. 1., 2012. 12. 11.>
 -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사람이 재학 연한까지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전공 학위만 수여한다.〈개정 2008. 3. 1., 2012. 12. 11.〉
 - ③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주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면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1., 2012, 12, 11.〉
 - ④ 각 단과대학장은 졸업사정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졸업예정자의 졸업 여부
 - 2. 학칙 제61조 제3항에 따른 학위 수여 및 수료의 취소에 관한 사항
 - 3. 기타 졸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5. 6. 5〉
 - ⑤ 총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를 학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 확정한다.〈개정 2015. 6. 5〉
- 제69조의3(학사학위취득 및 수료의 유예) ① 학칙 제60조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및 수료를 유예하려는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 2012. 10. 5., 2013. 6. 4., 2019. 3. 1.〉
 -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 받은 학생 중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과 수료 유예를 승인 받은 학생은 학칙 제55조에 따라 3학점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금을 해당 학기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한 다.〈개정 2012. 10. 5., 2013. 6. 4., 2019. 3. 1.〉

③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 10. 5., 2019. 3. 1.>

제69조의4 삭제〈신설 2012, 12, 11.〉〈삭제 2021, 4, 21.〉

- 제69조의5(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①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무시험 검정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수학점 기준: 입학연도별 교육과정을 이수
 - 2. 성적기준: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 3.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5. 성인지 교육: 4회 이상(연 1회 원칙)
 - 6. 결격사유(성범죄 경력 및 마약류 중독여부) 미해당자〈신설 2022 1. 6.〉
 - ② 제1항 각 호 요건의 이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21.〉

제7장 휴학, 복학, 재입학, 자퇴 및 제적〈개정 2022. 12. 1〉 제1절 휴학

제70조(휴학) ① 휴학 기간 및 증빙 서류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1, 11, 21, 2012, 12, 11〉

구분		휴학기간	증빙 서류	
일반휴학		1학기 또는 1년	없음	
특별휴학	입대휴학	군복무기간이 포함된 모든학기	입영통지서 또는 군입대확인서 등	
	질병휴학	1학기	4주 이상 진단서	
	임신휴학	1학기 또는 1년	진단서	
	출산육아휴학	1학기 ~ 3년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휴학	총장이 허가한 기간	해당 서류	

- ② 삭제〈개정 2011. 11. 21.〉
- ③ 휴학 허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1., 2012. 12. 11.〉 제71조 삭제〈개정 2011. 11. 21.〉

제2절 복학

- **제72조(복학)** ① 복학은 당해학기 복학신청 기간 및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1., 2012. 12. 11.〉
 - ②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사람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 하며, 복학을 신청할 때에는 전역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1., 2012. 12. 11., 2023. 5. 31.〉
- ③ 휴학자가 휴학 기간 중에 복학하려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의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1.〉〈개정 2013, 6, 4.〉
- 제73조(복학 시기) ① 삭제〈개정 2012, 12, 11.〉
 - ② 삭제<개정 2012. 12. 11.>

제3절 재입학 및 편입학<개정 2019. 3. 1.>

- **제74조(재입학)** ① 학칙 제36조에 따라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전까지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 2013. 6. 4.〉
 - ② 재입학자에게 해당학년의 입학 연도 기준으로 학번을 재부여 하며, 종전의학적부에 기록된 학점 등 학적 사항(복수전공 이수자격은 제외)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재입학 후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1., 2012, 8, 20., 2013, 6, 4.〉
 - ③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으면 다음 순서대로 재입학을 허가하되, 경합이 있으면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08, 3, 1, 2013, 6, 4,〉
 - 1. 학칙 제68조의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제적된 사람〈신설 2008. 3. 1〉〈개정 2013. 6. 4., 2022. 12. 1.〉
 - 2. 학칙 제67조에 따라 자퇴한 사람<신설 2008. 3. 1>< 개정 2013. 6. 4., 2022. 12. 1.>
- 제74조의2(편입학) ① 총장은 편입학을 실시하려면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편입학생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② 편입학 합격자는 편입학 전형 계획에서 정한 사정 기준에 따라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제74조의3(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① 편입학생은 편입학 학점 인정 신청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 ② 편입학생의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 및 자유선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3. 1., 2013. 6. 4., 2023. 9. 8.〉
- 제74조의4(전과) 〈삭제 2019. 3. 1.〉

제4절 자퇴·제적<개정 2022. 12. 1.>

- **제75조(자퇴)** ① 학칙 제67조에 따라 자퇴하려는 학생은 자퇴원(별지 제18호 서식)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22. 12. 1.〉
 - ② 총장은 자퇴를 허가하고 자퇴 사실을 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22, 12, 1.〉

제76조(제적) 학칙 제68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적되면 학장에게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10일 이내에 제적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2022. 12.1.〉

제8장 학적부

- 제77조(학적부 관리) ① 총장은 입학 등록을 마친 학생의 학적부(별지 제19호 서식)를 재학 중 전산 관리하고,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의 학적부는 전산 출력하여 보관한다.〈개정 2013. 6. 4.〉
 - ② 학적부는 보관 책임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람. 복사할 수 없다.
- 제78조(학적부 등재) 총장은 학생이 취득한 학업 성적과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도 교육 이수 결과를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1, 2009. 3. 1., 2013. 6. 4., 2018. 3. 1., 2021. 2. 23.〉
- 제79조(학적부 기록 정정) ① 학생이 학적부 기재 사항을 정정하려면 증빙 서류가 첨부된 학적부 정정원(별지 제20호 서식)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사무 착오로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으면 신고로써 정정 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 ②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을 정정하려면 제56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정정하고, 그 사실을 교육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③ 삭제〈2013. 6. 4.〉

제9장 제증명과 학생증

제1절 제증명

- **제80조(발급 대상)** 증명서 발급 대상은 본교 재적 학생 및 졸업 또는 재적하였던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1조(증명서의 종류)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6. 4.>
 - 1. 재학 증명서
 - 2. 재적(휴학) 증명서(개정 2012. 12. 11.)
 - 3. (학년)수료 증명서〈개정 2012. 12. 11.〉
 - 4. 졸업(예정)증명서
 - 5. 성적 증명서
 - 6. 학위 수여(예정) 증명서(개정 2012. 12. 11.)
 - 7. 제적 증명서〈개정 2012. 12. 11.〉
 - 8. 부·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서〈개정 2012. 12. 11.〉

- 9.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신설 2012. 12. 11.〉
- 10. 교육비납입증명서〈신설 2012. 12. 11.〉
- 제82조(발급 방법) 모든 증명서는 학사관리과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우편, 모사 전송, 인터넷, 자동증명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다.〈개정 2009. 3. 1., 2013. 6. 4.〉
- 제83조(발급 명의) 제증명은 총장 명의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4조(교부 대장)** 증명서를 발급 하려면 증명서 교부 대장(별지 제29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제85조(수수료)** ① 증명 수수료는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 규칙에 따른 다.〈개정 2009. 3. 1., 2013. 6. 4.〉
 - ② 삭제〈2013. 6. 4.〉

제2절 학생증

- 제86조(발급 대장) 학생증(별지 제30호 서식)은 학년 초 입학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발급한다.
- **제87조(발급 명의)** 학생증은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개정 2007. 3. 9〉
- **제88조(재발급)** ① 학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학생은 학과장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9., 2013. 6. 4., 2013. 9. 5.〉
 - ② 삭제<개정 2007. 3. 9>
 - ③ 학생증을 재발급 받는 학생은 따로 정한 수수료를 부담한다.〈신설 2013. 6. 4., 2013. 9. 5.〉
- **제89조(학생증 소지)** ① 학생은 항상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제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2013. 9. 5.〉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학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 다.〈개정 2013. 6. 4., 2013. 9. 5.〉
 - ③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제90조(무효)**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증은 무효로 한다.〈개정 2013. 6. 4., 2013. 9. 5.〉
 - 1. 유효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개정 2013. 6. 4., 2013. 9. 5.>
 - 2. 삭제〈개정 2007. 3. 9〉
 - 3. 해당 연도 학생이 졸업, 휴학, 자퇴 또는 제적되었을 때<개정 2013. 6. 4., 2013. 9. 5., 2022. 12. 1.〉
 - 4. 기재, 첨부, 날인 사항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손상 되었을 때〈개정 2013. 6. 4., 2013. 9. 5.〉

-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는 제88조의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 정 2013. 6. 4., 2013. 9. 5.〉
- **제91조(반납)** 학생증의 유효 기간 경과, 휴학, 졸업,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은 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92조(발급 대장)** 학생증을 발급하려면 학생증 발급 대장(별지 제32호 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2013. 9. 5.〉

제10장 학생활동

제1절 학생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

- 제93조(학생 자치 단체 활동) 학생 자치 단체 활동은 본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장차 교사로서의 자기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4조(학생 자치 단체의 등록) ① 학생 자치 단체는 조직한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총장(입학학생처)에게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단체는 학생 자치 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개정 2012, 5, 1, 2018, 3, 1,〉
 - ② 학생 자치 단체는 최소한 10인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③ 학생 자치 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장(입학학생처)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1, 2018, 3, 1,〉
 - 1. 학생 자치 단체 등록 신고서(별지 제33호 서식) 1부
 - 2. 회칙 또는 규약 1부
 - 3. 주요 활동 계획서 1부
 - 4. 임원 및 회원 명단 1부
 - 5. 지도 교수 동의서 1부
 - ④ 학생 자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항을 7일 이내에 총장(입학학생처)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2. 5. 1., 2018. 3. 1.〉
- **제95조(학생 자치 단체의 활동 제한)** 학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학생활동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 2. 26.〉
 - 1.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조장하는 행위〈신설 2010. 2. 26.〉
 - 2. 학칙에 위배되는 활동의 서명을 주도하는 행위〈신설 2010. 2. 26.〉
 - 3. 학사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신설 2010. 2. 26.〉
 - 4. 폭력성 집회를 조장하는 행위〈신설 2010. 2. 26.〉
 - 5. 타인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신설 2010. 2. 26.>
 - 6. 타인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신설 2010. 2. 26.>

- 제96조(집회 신고) ① 등록된 학생 자치 단체가 교내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회 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집회일 3일전까지 총장(입학학생처)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2018, 3, 1,〉
 - ② 학생 자치 단체가 학교 명의로 교외 집회(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회 승인 신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5일전까지 총장(입학학생처)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1, 2018, 3, 1,〉
- 제97조(시설물 이용) ①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총장(입학학생처)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2018. 3. 1.〉
 - ②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언론 활동

- 제98조(언론의 공적 책임) 학생 자치 활동에 있어서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 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언론 활동은 할 수 없다.
- 제99조(광고물 게시)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물에는 게시자 명의, 게시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0조(정의) 이 규정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편집에 학생이 관여하는 모든 간행물로써 인쇄, 프린트, 복사, 사진, 필기 등을 포괄한다.
- 제101조(간행물 발행 신고) 학생 자치 단체에서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입학학생처) 또는 학장에게 간행물 발행 신고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2018. 3. 1.〉

제11장 학생 지도

- 제102조(지도 교수) ① 학장은 매 학년도 개강 전까지 지도 교수를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도 교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학생 상벌

제1절 포상

- 제103조(포상 구분) 학칙 제73조 규정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졸업 우등상 : 학칙 제75조 해당자
- 2. 특 별 상 : 제1호 이외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4조(포상자 추천 및 결정)** 포상 추천은 다음 절차에 의하며 총장은 이를 심사하며 포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3. 1.〉

종 류	추 천 기 한	구비서류	추 천 자
졸업우등상	졸업식 3주일전	성 적 증 명 서	학 장
특 별 상	수 시	포 상 추 천 서 (별지 제37호 서식)	학장, 입학학생처장

- 제105조(포상 시기) 포상은 졸업식 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06조(통보 및 기록) ① 포상 결정 내용은 학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포상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 관리한다.

제2절 징계

- 제107조(징계 요구) ① 학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총장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이하 "본부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생징계위원회(이하 "대학(원)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학칙 제7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본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18. 3. 1.〉
 - ② 본부 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과 입학학생처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입학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대학(원) 징계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교원과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 3. 1.〉
 - ③ 각 징계위원회는 재적 위원 6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각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신설 2018. 3. 1.〉
 - ④ 징계 대상자의 소속 학과 교수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3. 1.〉
 - ⑤ 징계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
- **제108조(징계 대상자의 진술)** ① 징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3. 1.〉

- ② 징계 대상자가 진술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09조(징계 의결 통보)**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8. 3. 1.〉
 - ② 징계 의결 결과 통보를 받은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처분 결정에 앞서 징계 의결 결과를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제110조(재심 청구)** ① 징계 대상자가 제109조의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② 제1항에 의한 재심 청구가 있으면 총장은 지체 없이 본부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
 - ③ 학칙 제76조 제1항 제4호와 관련된 재심의인 경우 총장은 본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본부 징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재구성하여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111조(징계처분)** ① 학칙 제76조에 따른 의한 징계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12, 1.〉
 - 1. 근신
 - 2. 유기 정학(27일 미만) 〈개정 2022. 12. 1.〉
 - 3. 무기 정학(27일 이상) 〈개정 2022. 12. 1.〉
 - 4. 제적 〈개정 2022. 12. 1.〉
 - ② 징계 처분은 총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2. 12. 1.〉
 - ③ 징계 처분 기간 중에는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
- 제112조(무기 정학의 해제) ① 총장은 무기정학 중인 학생이 뉘우침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정학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학칙 제7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재학 기간에는 무기정학을 해제 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 2022. 12.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이 무기정학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
- 제113조(징계 기간의 기산) 징계 처분 기간은 징계 처분이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 한다.
- **제114조(기록 공고)** ① 총장은 징계 결정 내용을 학장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② 징계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 관리한다.

제13장 병사

제1절 학생 병사

- 제115조(재학생 입영 연기) ① 일반 등록을 필한 학생은(남자에 한함) 학적 보유자 명부 등재 신고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입학 후 7일 이내에 총장 (입학학생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총장은 병역법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의거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 소재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적 보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는 학적 보유자 명부 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16조(재학생 입영원 출원) 병역법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입영원을 출원한 학생은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제117조(학적 변동자 처리) 총장은 재학생 중 입영 연기된 학생으로서 다음 사유의 학적 변동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 1. 휴학, 자퇴, 제적생<개정 2013. 6. 4., 2022. 12. 1.>
 - 2. 복학 및 편입학생(개정 2013. 6. 4.)
 - 3.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제한 연령(대학 24세, 대학원 26세)이 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학생〈개정 2013. 6. 4.〉

제2절 대학 직장 예비군

- 제118조(편성 대상) 입학 등록을 필한 학생(복학, 재입학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 한다.〈개정 20 13. 6. 4.〉
 - 1.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계	대	중	소	대위	준		ठें	시	- 관	
급	·			•	사	상	사	중	하	사
별	령	령	령	소위	관	일등상사	이등상사	사	장단기하사	일반하사
연령	53	49	45	43	53	53	50	45	40	33

2. 육·해·공군 출신의 33세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군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제119조(대원 신고)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향토 예비군 대원 신고서 (별지 제41호 서식)를 대대 본부(사무국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장 부속 시설 이용

- 제120조(시설 이용) ①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도서관을 비롯한 부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부속 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부속 시설을 이용하려면 따로 정한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6. 4.〉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제4차 개정 학칙 공포(1988. 8. 22)이후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한 일체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이수학점)는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 규정) 1996년 2월말 이전에 경제적 사유 등으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제74조 제2항에 불구하고 재입학 허가 연도를 기준으로 4년간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재입학생수를 제외한 인원 만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규정)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과 제4항의 단서조항, 제53조5호, 제54조3호, 제59조제3항, 제78조의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2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9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다.

부칙(2004. 10.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20조의 규정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은 2007학 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9.)

부칙(2007.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개정 전에 부전공을 이수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8. 7.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77호, 2009. 3.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정 제416호,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22호, 2010. 7. 26.)

이 규정은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29호, 2010. 12. 21.)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45호, 2011. 11.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는 2011학년도 제2학기 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52호, 2011. 1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는 2012학년도 제1학기 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66호, 2012. 5. 24.)

부칙(규정 제474호, 2012. 8.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76호, 2012.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3은 2012학년도 전기 졸업대상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490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40조 및 제69조의4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69조의4제1항 및 제2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편입학 포함)부터 적용하되, 2012학년도 이전입학생(편입학 포함)은 "2회 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규정 제512호, 2013, 6,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19호, 2013, 6, 4,)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22호, 2013. 9.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45호, 2014. 6.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65호, 2015.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75호, 2015. 6.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98호, 2016, 5, 9.)

이 규정은 2016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20호, 2017.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21호, 2017. 2. 23.)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편입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31호, 2017, 6,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46호, 2018. 3. 1.)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 중 "사도교육원"을 각각 "사도교양교육원"으로 한다.

제78조 중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육원규정"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양교육원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 제101조 및 제115조제1항 중 "교학처"를 각각 "입학학생처"로 한다. 제104조 표 중 "교학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②까지 생략

부칙(규정 제647호, 개정 2018.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53호, 개정 2018. 4.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70호, 개정 2019.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3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수료) 유예를승인 받은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77호, 개정 2019. 6. 10.)

부칙(규정 제690호, 개정 2019. 1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93호, 개정 2020. 1. 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교육실습 참가로 결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706호, 개정 2020.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52조제3항제4호에 의한 절대평가는 2020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717호, 개정 2020. 10.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2조는 202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26호, 2021, 2, 23.)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33호, 개정 2021.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성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5의 제1항제2호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교직 적성·인성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5의 제1항제3호는 2013학년 도 이후 입학자부터 '2회 이상'으로 적용하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5의 제1항제4호는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졸업 또는 수료까지 남은 학기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남은 학기가 1학기인 경우: 적용 제외
 - 2. 남은 학기가 2학기인 경우: 1회 이상
 - 3. 남은 학기가 3학기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 제5조(성인지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5의 제1항제5호는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4회 이상'으로 적용하되,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졸업 또는 수료

까지 남은 학기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남은 학기가 2학기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 2. 남은 학기가 3학기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부칙(규정 제 749호, 개정 2022. 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 786호, 개정 2022.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 791호, 개정 2023. 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 804호, 개정 2023.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 812호, 개정 2023. 9.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원대학교 타대학과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3. 26.(규정 제127호) 전부개정 2018. 12. 7.(규정 제662호) 개정 2023. 4. 3.(규정 제792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라 국내· 외 대학(이하 "타 대학"이라 한다)과의 학생 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와 학술·학점교류협정을 맺은 대학 또는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3조(자격) ① 외국 대학과의 교류 수학 및 교환 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기 이수한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B₀ 이상인 학생
 - 2. 외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 3. 학칙 상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4.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 ② 국내 대학과의 학점 교류는 해당 대학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4조(수학 기간 및 등록금)** ① 타 대학과 교류 수학 기간은 협약에 따른다. 〈개 정 2023. 4. 3.〉
 - ② 제1항의 교류 수학 기간 중에도 우리 대학교의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타 대학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휴학 중 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그 기간을 수업연한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지워 및 허가

제5조(지원 시기) 타 대학과 교류 수학 지원 시기는 매학기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지원 서류) 타 대학과 교류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4. 3.〉
- 2. 지도교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3. 성적 증명서
- 4. 수학 계획서
- 5. 타 대학에서 요청한 서류
-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7조(수학의 허가) 타 대학 교류 수학은 소속 학과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허가한다. 제8조(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및 변경은 타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9조(수학신청의 취소) 교류 수학 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타 대학 수업일수 1/4 이내에, 타 대학 수학 취소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우리 대학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학점 인정 등

- 제10조(인정절차) ① 타 대학 교류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 신청 서(별지 제4호 서식)와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타 대학에서 총장에게 이수 성적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학과장은 제출된 성적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근거로 성적을 사정한 후 총장에게 학점 인정 신청을 한다.
 - ③ 학과장은 타 대학에서 당해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성적사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생 및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교과목 특성에 따라 학과장에게 성적을 재사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인정방법) ① 교과구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우리 대학교의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우리 대학교의 교직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우리 대학교 학과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이수한 교과목 중 이수 체계, 이수 단위 및 성적 평가 방식 등의 기준이 현 저히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된 관련자료 등을 참조하여 학과장이 결정한다.
- ② 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또는 교류 협정서에 명시된 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점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관련자료 등을 참조하여 학과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을 상향 조정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 3.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총 42학점까지 인정한다.
- ③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백분위 성적은 우리 대학교 등급 성적으로 환산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타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이 상대평가로 인하여 백분위 성적과 등급 성적이 불일치할 경우, 타 대학 등급성적 기준으로 백분위 성적을 재산출하여 우리 대학교 등급 성적으로 환산한다.
- 3. 타 대학에서 이수한 등급성적의 백분위 점수가 일정범위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중간 점수 또는 중간상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 등급성적으로 환산한다.
- ④ 교과목명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국내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은 그대로 인정한다.
- 2.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은 한글 및 영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교과목 명이 지나치게 길 경우 10자 이내로 줄여 의역할 수 있다.
- ⑤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이수국명과 대학명을 표기한다.
- 제12조(동일과목의 처리) ①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우리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구분 및 교과목명이 동일할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과장이 관련자료 등을 참조하여 동일 과목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우리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구분이 같고 교과목명이 유사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학과장 확인을 받아 동일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 장 타 대학 학생의 우리 대학교 수학 등

- 제13조(지원 자격 및 수학의 허가) ① 우리 대학교에서 교류 수학하고자 하는 타대학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교과목 개설 학과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
 - 2. 학칙 상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② 총장은 지원 학생의 수학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에게 교류 수학을 허가한다.
- 제14조(등록금 및 수강료) ① 정규학기에 우리 대학교에서 교류 수학하는 타 대

- 학 학생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우리 대학교에서는 교류 수학에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수강신청) 수강신청(또는 수강변경) 및 취소는 우리 대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16조(수학허가의 취소) 교류 수학 허가를 받은 타 대학 학생이 우리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대학으로 취소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취득 학점) 타 대학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소속 대학 기준에 따른다.
- 제18조(수학 기간) 타 대학 학생의 우리 대학교의 교류 수학 기간은 소속 대학 기준에 따른다.
- 제19조(성적의 통보) 타 대학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백분위 성적으로 환산하여 소속 대학으로 통보해야 한다. 단, P/F제 교과목은 이수(P) 또는 미이수(F)로 통보 한다.
- 제20조(시설물의 이용) 교류 수학 허가를 받은 타 대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 실습실, 기타 학생 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다른 규정 적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사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8. 1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학 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다.

(별지 제1호 서식)

타대학수학지원서

			-						
	소	속	대	학		학과		학년	
	성	o亞		주민등	등록번호				사진
지 원	학	压		등 록	학 기 수				
자	주	소						전화번호	
	총취득	·학점수			평 점	평 균			
		교류 수학점							
수	대학 및	및 학과							
학 대	주	소							
학	수학예	정기간	개월긴	t(.		~ .	•	.)	
위	와 같이	수학을 지	원합니다. 년	c	월 일				
			언	4	를 걸				
						지원자			(인)
첨년	쿠 서류: 1	기 이수	한 학기의 성적	증명/	서 1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귀하

2. 지도 교수 추천서 1부

3. 수학 계획서(수강 예정 교과목 및 신청 예정 학점 등이 포함될 것) 1부

지도교수추천서

	소속	대학				
추천	소속	학과				
대상자	성	명				
	학	번				
			추천 사유	ㅏ 및 특	기 사항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 .				
			년	월	일	
	추천자	학과	직위		성명	(인)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타대학수학취소신청서

.,,	소	속		대학			학과	학년	
신청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사진
자	학	번		등록	부학기수				
	대학	및 학과							
	주	소							
	수학	예정기간	개월	간(.		~)		
수 학			교과목명	학 점			취소 사유		비고
대									
학	시 첫	청 학 점							
	2 .	0 7 11							
위	와 같	이 수학을	는 취소 신청합 [·]	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첨구	부 서류	류: 취소 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 서류(행	당자	에 한함)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타 대 학 학 점 인 정 신 청 서

학점인정	제		다	학			교	육과							
신 청 자	학	-	١	번:			성	명:				(인)		
1 ^호 학점인정		7]	기 신청학점					인경	정학격	텀					
내 용	2학	기	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인경	정학격	텀				
취	득	ğ	<u></u>	점	ļ	Ó	<u>]</u>	정		학			7	섬	
교 과 목	명	학	점	성	적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학	점	성	적

한국교원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자 선발 및 이수에 관한 지침

2006. 10. 4. 제정 개정 2007. 12. 10. 개정 2010. 2. 9. 개정 2010. 8.26. 개정 2011. 8. 25. 개정 2012. 8. 13. 2012. 12. 5. 개정 개정 2014. 5. 7. 개정 2014. 11. 26. 개정 2015. 5. 7. 개정 2017. 3. 9. 개정 2018. 6. 26. 2020. 11. 18. 개정 개정 2021. 3. 16. 개정 2021. 12. 7. 개정 2022. 4.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사관리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복수 전공 이수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수전공"이라함은 학생이 입학한 학과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 공을 이수함을 말한다. 단, 특수교육과 내에서 2개 이상의 과정 이수를 통하여 복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2021. 3. 16.>

2."연계전공"이라함은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조2(복수전공위원회) ①복수 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수전공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과 각단과대학장으로 한다.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 1. 복수전공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1. 12. 7.> 제3조(선발인원) 복수전공 선발 인원은 해당 학과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100% 이내로 한다. 다만, 초등교육과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교육부 초등 복수전공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선발인원을 조정한다.<2014. 5. 7.>

- 제4조(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복수전공 신청기간 현재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신청학점이 30학점이상(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4학년 2학기(8학기)이 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제5조(적용대상) 제3조의 복수전공 선발인원 적용 기준은 2007학년도 입학정원 에 대한 선발부터 적용한다.
- 제6조(이수범위) ① 복수전공은 학과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 ② 연계전공은 연계전공 관련 학과를 이수하는 모든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연계전공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 ③ 연계전공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2017. 3. 9.> <2018. 6. 26.>
 - 1. 통합사회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 2. 통합과학교육전공: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제6조의2(이수제한) 주전공외에 1개 전공까지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2.08.13., 2012.12.05.>
 - 제7조(선발기준및방법) ① 복수전공 학과별 선발기준은 【별첨1】과 같다. <2014. 5. 7., 2014.11.26., 2015. 5. 7., 2020. 11. 18., 2021. 3. 9., 2021. 12. 7., 2022. 4. 28.>
 - ② 복수전공 이수자 선발은 제1항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되 실기시험 등을 병행하는 경우는 학과 자체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당해년도 학과별 선발 정원에 여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제8조(이수신청및포기)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지정하는 기 간에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삭제
 - ③ 복수전공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2학년1학기(3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있다.
 - ④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학과장을 거쳐 소속 학과장에게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원을 접수한 학과장은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복수전공 이수자가 퇴학 및 제적할 경우 그 복수전공 이수 권한을 회수 하고, 그 여석을 제7조 제3항의 추가선발 인원에 합산하여 선발한다.<개정 2012.08.13.>
- 제9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이수자는 주전공(입학한학과)의 졸업 소요학점 이외에 복수전공 소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복수전공을 이수 중 중도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10조(졸업) ① 당초 입학한 학과의 졸업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② 복수전공 이수자가 주전공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취득하였어도 복수전공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졸업사정 전까지 복수전공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7.>

부 칙

- ① 이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부·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하되, 2006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부전공 및 복수전공 선발 인원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0. 2. 9.)

- ① 이지침은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선발기준은 2010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8. 26.)

① 이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25.)

- ① 이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별첨 복수전공 학과별 선발기준은 2012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8. 13.)

① 이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5.)

-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의2는 2014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5. 7.)

이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6.)

이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7.)

- ① 이지침은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별첨의 선발기준은 201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3. 9.)

이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6.)

- ① 이지침은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제3항 선발기준은 2018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부터 적용하다.

부칙(2020. 11. 18.)

- ① 이지침은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제1항 선발기준은 2020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추가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3. 16.)

- ① 이지침은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제1항 선발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2. 7.)

- ① 이지침은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제1항 선발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4. 28.)

- ① 이지침은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제1항 선발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추가 선발부터 적용한다.

복수전공 학과별 선발 기준

【별첨】

1. 학과별 선발 기준

학 과	선 발 기 준
교육학 · 유아 · 국어 · 독어 · 불어 · 중국어 · 윤리 · 일반사회 · 지리 · 역사 · 물리 · 가정 · 기술 · 컴퓨터 · 환경교육	선발기준일까지 취득한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초등교육	선발기준일까지 취득한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① 선발인원 중 6명은 대학별 입학정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 선발한다. - 1대학: 1명, 2대학: 2명, 3대학: 2명, 4대학: 1명 ② 제1항의 우선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대학별 선발인원과 관계 없이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특수교육	선발기준일까지 취득한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 및 면접점수 순으로 선빌 ※ 반영비율: 성적 80%, 면접 20%
영어교육	선발기준일까지 취득한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순으로 선발하되, 토익성적 750점이상 취득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학교육	미적분학및연습I 및 미적분학및연습II를 수강한 자 또는 수강중인 자 중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화학교육	기본화학및실험I 및 기본화학및실험II 또는 일반화학I 및 일반화학II 중 두 과목을 이수하고, B ⁺ 이상 취득한 자 중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생물교육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5 이상이며, 일반생물학Ⅰ 및 일반생물草 Ⅱ 두 과목 모두 A0 이상 취득한 자 중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지구과학교육	선발기준일까지 취득한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중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음악교육	화생이 선택한 1분야 실기 과제곡 합격자 선발기준일까지 취득한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분 야 실기 과제곡 피아노 ○읍계: 전 장읍계, 단읍계(화성)의 4옥타브 ○작곡자가 다른 2곡 성 악 ○자유곡 1곡 작 곡 ○읍악이론 ○간단한 작곡 실기 테스트 가야금 ○입시과제에 준하는 1곡 서양음악이론 ○기악 1곡 연주 ○이론 테스트
미술교육	실기종목 : 4절 켄트지에 3시간 정물 소묘 합격자 선발기준일까지 취득한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체육교육	실기종목에서 합격자 선발기준일까지 취득한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실기종목 실시 방법 출발선에서 '준비'한 다음 '출발'신호와 함께 달려가 맞은 편 각목 하나를 집어 들고 출발선 반원 안에 무고 다시 달려가 나머지 각목 하나를 집어 들고 다 시 출발선위의 반원 안에 갖다 놓는다. 높이뛰기 각자의 출발선에서 '준비'한 다음 '출발'신호에 따라 배면뛰기의 자세로 높이뛰기를 실시한다. 공을 잡고 '준비' 자세를 취한 다음 '시작' 구령에 의하여 재빨리 토스를 표시선 안에 바운드 시키는 동작을 계속한다. 실시 도중 공이 떨어지면 신속히 구령으로 동작을 종료한다. 택기 (준비' 구령에 따라 뛰어 올라 바로잡기로 매달린다. '진비' 구령에 따라 턱걸이 철봉위로 완전히 올라 올 때까지 팔을 굽혔다가 완전히 펴는 동작을 반복한다. 서 바로잡기로 잡고 턱이 철봉위로 나오도록 하여 팔 에달리기 (여) 자를 빼면 턱걸이 한 채로 매달려 있는다. 턱이 철봉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만' 구령으로 계측한다.

2. 공통 기준

가. 동점자 적용기준

- 1) 전체과목 수강학점이 많은 자로 하되, 수강학점이 동일할 경우 취득성적의 평점 평균이 높은 사람 <개정 2012.08.13., 삭제 2021.12.7.>
 - 2) (삭제) <삭제 2021.12.7.>
- 나. 제1지망의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만 제2지망 지원자 중에서 선발한다.
- 다. (삭제) <개정 2014. 5. 7.>

한국교원대학교 편입학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09.02.16. 개정 2013.02.14. 개정 2014.07.02. 개정 2014.11.26. 개정 2017.03.09. 개정 2020.08.25. 개정 2023.09.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37조 및 학사관리규정 제74조의3에 의하여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편입학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재학연한)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제4조(학점인정) 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4. 7. 2., 2014. 11. 26.>

- ② 총 인정학점은 70학점 이내로 하며, 영역별 인정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양과정은 2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청람인성 영역의 3학점은 추가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7. 3. 9., 2023. 9. 12.>
- 2. 교직과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한하여 24학점 이내로 인정하되,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4. 7. 2., 2014. 11. 26.>

가. 교직이론: 12학점 이내

나. 교직소양 : 6학점 이내

다. 교육실습: 4학점 이내(자격종별이 다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교육봉사 : 2학점 이내

- 3. 전공과정은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 이내로 인정하되, 현재의 전공(초등 교육과 심화과정 포함)과 일치하는 전적대학의 전공과목에 한한다. 단, 전적대학의 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이후, 학점 인정 변경 신청을 통해 15학점 이내로 추가 인정한다. <개정 2014. 7. 2., 2020. 8. 25.>
- 4. 자유선택은 제1호~제3호의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으로 한다.
- 5.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우리대학 교과목의 학점이 상이한 경우 낮은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20. 8. 25.>
- ③ 교육부고시 제6조제3항의 교직과목 면제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 자에 대한 교직과정 학점은 24학점으로 인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2., 2014. 11. 26.>
- 1. 교직이론 : 12학점 <개정 2014. 7. 2., 2014. 11. 26.>
- 2. 교직소양 : 6학점<개정 2014. 7. 2., 2014. 11. 26.>

- 3. 교육실습: 4학점(자격종별이 다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2.>
- 4. 교육봉사 : 2학점(교육실습을 4학점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4. 7. 2.>
- ④ 전공과정의 학점인정은 편입학 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를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이수) 편입학년도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다.

제6조(복수전공 신청자격) 복수전공 신청기간 현재 3학년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 편입학 후의 신청학점이 30학점 이상(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4학년 2학기 이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4.)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2항 및 3항 개정지침 은 201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7.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3호 및 제4조제3항은 2014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1.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1호 내지 제2호 및 제4조제3항은 2015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3.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5학년도 ~ 2016학년도 편입학자의 경우 제5조에 따라 편입학년도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2항제1호에따라 교양 청람인성 영역 2학점을 추가 이수해야한다.

부 칙(2020. 8. 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는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서식 1)

편입학자 학점 인정 신청서

1. 인적사항

편입학과	편입학년	성 명	학 번	연 락 처

2. 학점인정 내역

	전적대학 교과목명 및 학전	4			nj -a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계			-			

위와 같이 인정함.

년 월 일

대학 학과장 (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지침

정 2009. 4. 6. 제 1차 개정 2010. 3. 22. 제 2차 개정 2011. 6. 28. 제 3차 개정 2011. 9. 26. 제 4차 개정 2012. 6. 13. 제 5차 개정 2013. 2. 27. 제 6차 개정 2014. 1. 2. 제 7차 개정 2014. 4. 3. 제 8차 개정 2014. 5. 22. 제 9차 개정 2014. 9. 2. 제10차 개정 2015. 3. 3. 제11차 개정 2015. 11. 5. 제12차 개정 2017. 2. 3. 제13차 개정 2018. 8. 22. 제14차 개정 2018. 11. 5. 제15차 개정 2023. 9. 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의거 교육실습을 이수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의 활동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고 예비교사로서의 경험과 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교육실습

- 제2조(방침) ① 본 실습은 교육실습 과정에 따라 참관·수업·실무실습, 교육봉사 활동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교육실습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습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우리대학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③ 교육실습 기간 중 정규 수업은 사전에 보충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육실습운영위원회) ① 교육실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설유치원 원감, 부설월곡초등학교·부설 미호중학교·부설고등학교 실습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전임교원으 로 한다. <개정 2018. 8. 22.>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 1. 교육실습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교육실습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실습 이수 구분 및 시기) 교육실습은 초등교육 참관실습, 교육실습I·II, 제2교육실습, 교육봉사I·II,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각 과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부생
- 1. 주전공 <개정 2018. 8. 22.>

	구 분	학점	실습(주)	이수시기	실시 기관	실습 내용	
초등교	2육 참관실습	P/F	1	3학기 (역학기 복학자 2학기)		참관실습(1주)	
'n	<i>1</i> 육실습 I	2	4	6학기 (역학기 복학자 5학기)	한국교원대학교 부설학교 및 협력학교	참관실습(1주) 수업실습(3주)	
\mathfrak{M}^{l}	육실습 II	2	4	7학기 (역학기 복학자 6학기)	(개별 지정학교 포함)	참관실습(1주) 수업실습(2주) 실무실습(1주)	
O H z) T	2009~2010 학년도 입학자		30시간 이상	재적 중			
교육봉사 I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미실시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육봉사활동	
- 0 日 z l n	2009~2010 학년도 입학자	2	60시간 이상	게지 ス	(재외 한국학교 및 와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학교 포함) 등	<별표 1>	
<u> </u>	교육봉사 II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90\\\{T	재적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P/F	1회(2시간)	1~2학년	취구고 의미하고	편입생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실습I	P/F	1회(2시간)	3~4학년	한국교원대학교	2회(4시간)	

2. 복수전공

가. 학교급별이 같은 복수전공 이수 시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이상의 교사자격 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한다. 단,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을 원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과목으로의 교육실습 신청서(별지 서식 제6호)를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 게 제출(별지 서식 제6~7호)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학점	실습(주)	이수시기	실시 기관	실습 내용
교육실습 I	2	4	6학기 (역학기 복학자 5학기)	한국교원대학교 부설학교 및	참관실습(1주) 수업실습(3주)
교육실습 Ⅱ	2	4	7학기 (역학기 복학자 6학기)	협력학교 (개별 지정학교 포함)	참관실습(1주) 수업실습(2주) 실무실습(1주)

나. 학교급별이 다른 복수전공 이수 시(편입학생 포함)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 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2.>

구	분	학점	실습(주)	이수시기	실시 기관	실습 내용
제2교	육실습	2	4	7학기 (역학기 복학자 6학기) (하기 방학 중)	한국교원대학교 부설학교 및 협력학교 (개별 지정학교 포함)	참관실습(1주) 수업실습(2주) 실무실습(1주)

② 대학원생 중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을 받은 자 <개정 2018. 8. 22.>

구	분	학점	실습(주)	이수시기	실시 기관	실습 내용
제2교육	실습	2	4	3학기 (하기방학 중, 단 후기입학자 및 역학기 복학자 2학기)	한국교원대학교 부설학교 및 협력학교 (개별 지정학교 포함)	참관실습(1주) 수업실습(2주) 실무실습(1주)
교육봉사	아 II	2	60시간 이상	2~4학기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재외 한국학교 및 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학교 포함) 등	교육봉사활동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P/F	1회(2시간)	메윈 Z	한국교원대학교	
응급처치 심페소생술		P/F	1회(2시간)	재학 중	(교육)대학원	

제5조(교육실습 내용) ① 참관실습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실제 관찰 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예비교사로서의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수업관찰 : 수업계획실천, 평가 등 수업 전반에 관한 내용
- 2. 특별활동관찰 : HR, 계발활동, 생활지도, 학교 행사 등 특별활동
- 3. 학교운영관찰 : 학교운영의 계획, 실천, 평가 등 운영 활동
- 4. 학교경영관찰 : 학교 교육 계획, 학습지도 계획, 각종 회의, 사무분장, 시설 및 설비 관리 등 학교 경영 전 과정
- ② 수업실습은 현장 수업 기술을 함양한 학습과정의 내용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일일 업무 : 수업, 학생지도, 각종 수업자료 준비, 교육매체활동, 일일 실습 평가
- 2. 주간별 업무 : 대표 수업, 주별 회의 참석
- 3. 수업실습지도안 작성
- ③ 실무실습은 학교 교육 및 교육활동에 관한 실제의 실무처리 능력과 이해를 기르는 과정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경영 활동 : 학교경영 계획 및 이해, 학습 경영, 사무처리
- 2. 분장 업무 수행 : 각종 일지 작성, 학습 업무, 사무 · 공문서 처리
- 3. 학급 운영 : 학습지도, 수업 연구 활동, 학생 특별활동 지도, 환경미화
- ④ 교육봉사I·II는 학교 현장 등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제 체험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예비교사로서의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2.>
- 1. 학교 교육과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방과후교육활동, 수업보조교사, 수업지원 자료 제작 등
- 2. 학교 행사 지원 : 운동회, 현장 학습, 학습발표회 등
- 3.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 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방과 후 수준별 지도, 멘토 교사제 등
- 4.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 독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체육관 등
- 5. 다문화·탈북학생 학습 도우미
- 6. 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
- 7. 자유학기제 체험탐구활동 지원
- 8. 기타 교육관련 활동
- 제6조(교육실습 과정 운영 및 세부이수 기준) ① 초등교육 참관실습은 초등교육과 학생(복수전공자 포함)을 대상으로 2학년 1학기에 1주간 실시한다.
 - ② 교육실습I은 3학년 2학기에 4주간 실시한다. 단, 초등교육과 학생은 초등교육 참관실습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③ 교육실습II는 교육실습I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4학년 1학기에 4주간 실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습Ⅱ를 우선 이수할 수 있 다.<개정 2023. 9. 4.>
- 1.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39조 제1항의 사항으로 인하여 교육실습 I 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3. 9. 4.>
- 2. 국제 교육실습 또는 국내 국제학교 교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개정 2023. 9. 4.>
- ④ 제2교육실습은 하기 계절 학기에 4주를 실시하되, 교육실습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1. 학 부 : 학교급별이 다른 제2전공(편입학자 포함)이수자(7학기 또는 역학 기 복학자 6학기 재학생부터 가능). 단, 초등교육 복수전공이수자는 초등교육 참관실습을 이수한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18. 8. 22.>
- 2. 대학원 : 입학전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을 학점 인정받고 3학기 재학생부터 가능(단, 후기 입학자 및 역학기 복학자는 2학기부터 가능) ⑤ 교육봉사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교육기관에서 개별 실시한다.
- 1. 학부생 : 교육봉사I은 재적기간 중 총 30시간 이상, 교육봉사II는 재적기간 중 총 60시간 이상
- 2. 대학원생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을 받은 대상 자는 학부 관련 학과(분반)에 교육봉사II를 신청(수강신청기간 중)하고, 2~4학기 중에 총 60시간 이상 <개정 2018. 8. 22.>
- 제7조(교육실습 지도교수) ① 교육실습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전교육, 순회지도, 사후지도를 실시한다.
 - ② 각 과정별로 교육실습 지도교수(이하 "순회 지도교수"라 한다.)를 지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별도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④ 교육실습 종료 후 2주 이내 순회지도 및 평가회 결과보고서(별지 서식2, 3호)를 제출한다.
 - ⑤ 사전교육을 위한 초청강사, 순회지도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실습 협력학교) ① 교육실습학교는 본교 부설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교육실습협력학교로 지정한 학교(이하 '실습학교'라고 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지정학교로의 교육실습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교육실습 동의서(별지 서식 제8호)를 학과장(전공주임)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별지 서식 제8~9호)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과 동일기간만인정한다.

- ② 교육실습 협력 학교장은 실습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1. 실습생 지도 현안은 순회 지도교수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교육실습생이 무단으로 실습기간(실제근무일 기준)의 1/4 이상 결석한 때에는 실격 처리한다.
- 3. 교육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일지 및 출근부를 실습생을 통하여 우리 대학 해당학과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4. 교육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 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실습 평가) ① 성적 평가는 학사관리규정 제52조(성적등급 분류 및 실 점 환산표)의 제3항에 의하여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 ② 교육실습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실습학교 평가는 70점, 실습 지도 교수 평가는 30점으로 한다.
 - ③ 교육실습 순회 지도교수는 실습학교에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최종 성적을 입력한다. 단, 초등교육 참관실습 성적은 실습학교에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 후 P/F로 입력한다.
- 제10조(교육봉사 운영 및 평가) ① 학부생의 교육봉사I·Ⅱ와 대학원생의 교육봉사Ⅱ 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봉사활동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하고, 교육실습 관련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1.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개정 2023. 9. 4.>
 -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개정 2023. 9. 4.>
 - 3.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개정 23. 9. 4.>
 - 4.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개정 2023. 9. 4.>
 - 5.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정 2023. 9. 4.>
 - 6.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개정 2023. 9. 4.>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신설 2023. 9. 4.>
 - 8. 총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 <신설 2023. 9. 4.>
 - ③ 교육봉사 운영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 1. 학부생은 재학 중, 대학원생은 2~4학기 중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2>
 - 2. 교육봉사를 실시한 자는 당해 기관에서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졸업 전까지 해당 학과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2.>

3. 학과장은 교육봉사활동관리대장(별지 서식 제5호)을 작성한 후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를 P/F로 평가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최종 성적을 입력한다. <개정 2018. 8. 22.>

제 3 장 국제 교육실습

제11조(국제 교육실습의 정의) 국제 교육실습은 우리 대학에서 주관한 국제 교육실습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외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 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국제 교육실습생의 선발)

- ① 국제 교육실습 담당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은 국제 교육실습 대상 외국학교의 실습일정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 ② 부서장은 국제 교육실습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제 교육실습 후보 학생을 선발한다.
- ③ 부서장은 전 항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로 선발된 학생을 교육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제13조(학생지도) 국제교육실습을 통한 학사운영에 있어 학생지도는 본교 및 실습학 교에 지도교수를 임명하여 지도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9. 4.>]

- 제14조(학점인정) ① 국제 교육실습 취득학점의 인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실습 운영 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실습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제교육실습 실시 이전에 외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실습 계획서와 교육실습 일정표
 - 2. 국제교육실습 종료 후 국제교육실습 결과보고서, 교육실습일지, 실습학교 평가결과 서, 성적평가서 <개정 2023. 9. 4.>
 - ② 실습 지도교수는 실습생이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성적(30점)과 실습학교의 평가점수(70점)를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개정 2023. 9. 4.>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4.>]

제15조(국제교육실습의 인정 범위) 최소 4학기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4주 이상의 국제교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교육실습 I 또는 교육실습Ⅱ의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23. 9. 4.>

[제14조에서 이동 <2023. 9. 4.>]

- 제16조(주관 부서) 국제교육실습에 관한 제반 업무는 국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 제17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실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국내 국제학교 교육실습

- 제18조 (정의) 국내 국제학교 교육실습은 우리 대학과 교류협의에 의하여 교육실 습 협력학교로 지정된 국내 내의 국제학교에서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9조 교육실습의 이수 시기 및 실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점	실습(주)	이수시기	실습기관	실습 내용
국내 국제학교 실습	2	4	동기방학 중	본교와 교류 협의한 국내 국제학교	참관실습(1주) 수업실습(2주) 실무실습(1주)

제20조 (교육실습생의 선발)

- ① 교육실습 담당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은 교육실습 대상 국제학교의 실습 일정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 ② 부서장은 국제학교 교육실습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제학교 교육실습 후보 학생을 선발한다.
- ③ 부서장은 전 항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로 선발된 학생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다.
- 제21조 (학생지도) 국제학교 교육실습을 통한 학사운영에 있어 학생지도는 본교 및 실습학교에 지도교수를 임명하여 지도한다.
- 제22조 (주관부서) 국제학교 교육실습에 관한 제반 업무는 국제학교 교육실습 프 로그램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 제23조(교육실습생 제출 서류) 교육실습생은 교육실습 종료 후 국제학교 교육실습 결과보고서와 교육실습일지를 교육실습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4.>
- 제24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학사관리규정 제52조의 제3항에 의하여 절대평가 로 할 수 있다.
 - ② 교육실습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실습 지도교수는 제20조에 의거 실습생이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성적(30점)과 실습학교 평가 점수(70점)를 합산하여성적을 부여한다.
- 제25조(인정범위) 최소 4학기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4주 이상의 국제학교 교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교육실습 [또는 교육실습 [의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4.> [제목 개정 <2023. 9. 4.>]

제26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실습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하다.

제 5 장 실습학기제

- 제27조(정의) "실습학기제"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상담 등을 경험하기 위해 학기 전(全) 과정 동안 정규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되는 교육실습을 말한다.
- 제28조(운영 계획 수립) 실습학기제 담당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은 실습 과목, 실습 인원, 주차별 실습 시간 편성 등 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제29조(이수 학생 선발) 학과장은 제28조에 의한 운영 계획에 따라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추천하고, 부서장은 이수 학생을 선발한다.
- 제30조(학점인정 및 이수시기) 교육실습을 실습학기제로 이수한 학생은 「교육실습 I」 과 「교육실습Ⅱ」를 동일 학기에 이수 한 것으로 하며, 이수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학점	이수시기	실습기관	
교육실습 I	2	6학기(역학기 복학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학교 및 협력학교	
교육실습Ⅱ	2	5학기) 이상	(개별지정학교 포함)	

- 제31조(성적평가) 성적 평가는 지침 제9조를 준용하되, 해당 학기에 편성한 4주의 교육실습과 그 외 기간의 교육실습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각각 「교육실습Ⅰ」과 「교육실습Ⅱ」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 제32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실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4조, 제5조 제4항, 제6조 제4항 내지 제5항, 제10조는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1. 제4조 제2항 지침 개정전에 2010학년도 이전에 사회봉사II(2분반)를 이수하고, 사회봉사I(2분반)을 미 이수한 자는 2010학년도 제1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이외의 학생은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교육봉사II를 이수하여야 한다.
- 2. 2009학년도 대학원 입학자 중 2009학년도 제2학기부터 사회봉사로 실시한 시간은 교육봉사 시수로 인정한다.

부 칙(2011. 6. 28.)

① 이 지침은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제6조 규정과 관련하여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3학년도 제1학기까지 교육실습I·II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3학년도 제2학기부터 각각 4주의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2010학년도 입학자는 2011학년도에 「참관실습」(2주)을 실시하되, 「교육봉사 I」(30시간)과 「참관실습」(2주)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봉사 I」의 잔여 시간은 「교육봉사 I」시간으로 인정한다.

부 칙(2011. 9. 26.)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0조 제2항 별표 1의 제3호 마목은 2011학년도에는 2011학년도 입학자만 적용한다.

부 칙(2012. 6. 1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2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7.)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4조 규정과 관련하여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입학자 중 2013학년도 제2학기 이후 교육실습 I을 이수할 경우 교육봉사 I을 면제한다.

부 칙(2014. 1. 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3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4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초등교육 참관실습의 경우 초등교육과 학생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복수전공자는 2015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3. 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2.)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1.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실습 관련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 1.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교육봉사I 30시간 이상, 교육봉사II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교육봉사기관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8. 8. 22.>

※ 평생교육시설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예시<개정 2018. 8. 22.>

구 분	기관명	비고
평생교육시설	경기미용고, 군산평화중, 경북미용예술고, 부산예원고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전국 시·도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대학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독립기념관 등	

- 3. 교육봉사 인정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다.
- 4. 교육실습 관련 봉사활동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학교행사지원,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다문화・탈북학 생 학습 도우미, 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 자유학기제 체험탐구활동 지원 및 기 타 교육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교 교육과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방과후교육활동
 - 수업보조교사
 - 수업지원 자료 제작 등
 - 나. 학교행사 지원
 - 운동회
 - 현장학습
 - 학습발표회 등 각종 행사활동 지원

- 다.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 방과후 수준별 지도 등
 - 학습부진 학생과의 1:1 멘토교사제 운영
- 라.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 독서실
 - 컴퓨터실
 - 과학실
 - 체육관 등
- 마. 다문화 탈북학생 학습 도우미
- 바. 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
 - 예체능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충활동
 - 방과후학교 연계형 활동프로그램 지원
- 사. 자유학기제 체험탐구활동 지원
- 아. 기타 교육관련 활동

〈별지 서식 제1호〉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

1. 실습학교명 :

2. 실습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주간)

3. 지도교사 :

직	성 명	담	당	내	용	刊	고

4. 실습내용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5. 교육실습 성적 : 붙임 서식 첨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교육실습Ⅰ성적

(유아·초등)

	실 습 생		참관실습	<u>수업실습</u>	실습일지	근무상황	계
학 과	학 번	성 명	(20점)	(25점)	(10점)	(15점)	(70점)

교육실습 I 성적

(중등)

	실 습	생	참관실습	<u>수업실습</u>	학급경영	실습일지	<u>근무상황</u>	계
학 과	학 번	성 명	(15점)	<u>(20점)</u>	(10점)	(10점)	<u>(15점)</u>	(70점)

교육실습 I 성적

(<u>특수)</u>

	실 습 생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습일지	근무상황	계
학 과	학 번	성 명	(20점)	(25점)	(10점)	(15점)	(70점)

교 육 실 습Ⅱ 성 적

(유아)

							(<u>' </u>
		생	참관실습 (10점)	<u>수업실습</u> (15점)	실무실습 (20점)	실습일지 (10점)	<u>근무상황</u> <u>(15점)</u>	계 (70점)
학 과	학 번	성 명	(10百)	<u>(10日)</u>	(20百)	(10.9)	<u>(10.月)</u>	(70百)

교 육 실 습Ⅱ 성 적

(초등)

학과 학번 성명 (10점) (15점) (20점) (10점) (15점) (70 ⁹	
)

교육실습Ⅱ성적

(중등)

	실 습	생	참관실습	<u>수업실습</u>	실무실습	학급경영	실습일지	근무상황	계
학 과	학 번	성 명	(10점)	<u>(15점)</u>	(10점)	(10점)	(10점)	<u>(15점)</u>	(70점)

교육실습Ⅱ성적

<u>(특수)</u>

<u></u> 학 과	실 학 번	생 성	 명	참관실습 (10점)	수업실습 (15점)	실무실습 (20점)	실습일지 (10점)	근무상황 (15점)	계 (70점)
, ,	, ,								

제 2 교 육 실 습 성 적

(유아)

	실 습 서	J	참관실습	<u>수업실습</u>	실무실습	실습일지	<u>근무상황</u>	계
학 과	학 번	성 명	(10점)	(15점)	(20점)	(10점)	(15점)	(70점)

〈붙임 서식 제1-9호〉

제 2 교 육 실 습 성 적

(초등)

	실 습 생		참관실습	<u>수업실습</u>	실무실습	실습일지	<u>근무상황</u>	계
학 과	학 번	성 명	(10점)	<u>(15점)</u>	(20점)	(10점)	<u>(15점)</u>	(70점)

〈붙임 서식 제1-10호〉

제 2 교육실습성적

(중등)

								() (
	실 습 생	}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무	학급경영	실습일지	<u>근무상황</u>	계
학 과	학 번	성 명	(10점)	<u>수업실습</u> (15점)	<u>실무실무</u> (10점)	(10점)	<u>실습일지</u> (10점)	<u>(15점)</u>	(70점)
7 -1	7 4	0 0	(17	(17	(17	(1)	<u> </u>	<u> </u>	(- 1)
<u> </u>									

〈붙임 서식 제1-11호〉

제 2 교 육 실 습 성 적

<u>(특수)</u>

	실 습 생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실습일지	근무상황	계
학 과	학 번	성 명	(10점)	(15점)	(20점)	(10점)	(15점)	(70점)

〈붙임 서식 제1-12호〉

초등교육 참관실습 성적

	실 습 생		크리 시스(FO되)	그 ㅁ 기 취 (0 0 건)	-게 (ㅁㅇ 거)
학 과	학 번	성 명	참관실습(50점)	근무상황(20점)	계(70점)

〈별지 서식 제2호〉

교육 실습 순회 지도 결과 보고서

1. 순회 지도	날짜 : 20	()		
2. 방문 학교도	면 :			
3. 순회 지도	결과			
순회지도 영역	□ 교육과정	□ 수업지도	□ 생활지도	
한격시고 8년	□ 학급경영	□ 교직문화	□ 교직실무	□ 기타()
순회지도 내용				
교육실습	순회 지도 전	결과는 위와 >	같습니다.	
	20			
		제	대학	교육과
		직	성명	(인)
			한국교원대학	학교총장 귀하

〈별지 서식 제3호〉

교육실습 평가회 실시 결과 보고서

가. 학 과 명:

나. 일 시:

다. 장 소:

라. 참석지도교수:

마. 평가회 내용:

바. 기 타:

교육실습평가회 실시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20 . . .

제대학교육과직성명(인)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서식 제4호〉<개정 2018. 8. 22.>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 실시 대상자 : - 대학생(재적 중)

- 대학원생 중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을 받고 2학기~제4학기에 교육봉사II를 신청한 자

			, ,,,, ,			, 0	'					
봉 신	▶활동실시자 적 사 항	학과 (전공)			학번			(4	학년 학기)		성명	
봉사	기관명(학교)				주 소							
봉사	활동지도교사				(인)	전화	번호					
차례	년/월/일		봉 사 횥	- 동	내 용		봉사	시간		담당/	아소 견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기관) 장 (직인)

〈별지 서식 제5호〉

교육봉사활동 관리대장

학과: 교육과

제출인자 학 번 성 명	اد اد خاد	.=·1	,11	,) -	J	교육	· · · · · · · · · · · · · ·		인정	여부	학과장
	제출일자	악	번	성 5	o	봉사기관	활동기간	활동시간	인정	불인정	확 인

※ 첨부 : 개인별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매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신청서

소 속	대학	교육과	성 명	
학 년		학 기		
학 번		(교육실 * 복수전공	습) 과목	

위와 같이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또는 서명)

학과의 방침에 따라 위 학생의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을 허가합니다.

20 . . .

학과장 (인 또는 서명)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귀하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신청 현황

대학명:

순	학과	학번	학기	성 명	복수전공과목	비고

교육실습 동의서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학생 신청자용)

1. 인적사항

·· — ·· ·· ·							
소 속			대흐	낚(원)			학과(전공)
성 명			학	번			성별 (남·여)
학년(학기)			학년	<u>크 (</u>	학	기)	
실습희망과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	-	자 택	() –
	e-mail						

2. 실습희망학교

학교명	주 소	신청사유	실습기간	비고
			학사일정과 동일	

3. 교육실습담당교사

<u>v: </u>	<u> </u>				
담당과목	성 명	전화번호	비고		

귀 교에 재학중인 위 학생의 교육실습을 본교에서 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직인)

위와 같이 상기 학생을 개별 지정학교로의 교육실습을 허가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과장(전공주임) (인 또는 서명)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서식 제9호〉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자 현황

대학명:

순	학과	학번	성명	실습과목	실습학교명

한국교원대학교 계절수업 운영 지침

제정 2013. 05. 28. 개정 2013. 10. 10. 개정 2017. 01. 16. 개정 2022. 03. 07.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과목 개설) 교과목 개설은 학장이 요청한 교과목 중에서 총장이 정하여 개설 하되, 개설교과목의 수강 신청 인원은 1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명 미만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되, 이 경우 수강료는 15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강자가 공동 부담한다.<개정 2022. 3. 7.>
- **제3조(수강자격)** ① 우리대학 학생은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생 중 8학 기 이상 이수자는 수강을 제한한다.
 - ② 타 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총(학)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수강신청) ①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4분의 1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② 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수강학점) 매 계절수업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제6조(수강료)** ① 계절수업의 수강료는 수강 신청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1. 16., 2022. 3. 7.〉

수강신청인원	학점당 수강료
15명~30명	48,000원
31명 이상	46,000원

- ② 이수학점 P/F교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수강료는 1회(2시간)에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7. 1. 16.〉
- 제7조(수강료 반환) 수강을 취소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 1. 수업 개시일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2. 수업 개시일로부터 수업일 5일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 3. 수업 개시일로부터 수업일 7일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 4. 수업 개시일로부터 수업일 7일 경과 후 :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8조(시험 및 성적) 계절수업의 시험과 성적은 학칙과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9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 ②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단위 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3. 7.>

부칙(2013.10.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2013학년도 동기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01.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원대학교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의 유예 제도 운영 지침

제정 2012.10.09. 개정 2019.03.13.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60조 및 학사관리규정 제69조의3에 따라 학사학위취 등 및 수료 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13.>
 - 1.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라 함은 학칙 제61조에 규정된 졸업(수료)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수료)을 하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학기동안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라 함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 받은 자를 말하며, "수료유예자"라 함은 수료 유예를 승인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의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적생으로 보며, 수료 유예자는 재학 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9. 3. 13.>
- 제4조(적용대상)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수료)대상자로서 졸업(수료)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학하기를 원하여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 의 승인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3.>
- **제5조(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3.>
- 제6조(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① 학칙 제46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 제47조의 재학연한을 초과 하지 아니한 자
 - ② 학칙 제61조에 규정된 졸업(수료)요건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제7조(신청시기) ① 1회째 신청은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말 신청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3.>
 - ② 2회째 신청은 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신청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3.>
- 제8조(유예절차)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는 학생의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9. 3. 13.>
- **제9조(유예조건)** ①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자는 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3.〉
 -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 희망자와 수료 유예자는 학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3.>

-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 희망자와 수료 유예자의 등록금은 학사관리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수강학점별로 차등 징수 한다. 다만, 학사관리규정 제45조에서 정한 계절수업을 수강할 경우에는 학사관리규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9. 3. 13.〉
- 제10조(학위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사 정을 재심사하여 해당학기 학위 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 3. 13.〉
- 제11조(유예 취소) ① 수료 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강 또는 미등록한 경우, 수료 유예를 직권취소한다. 〈개정 2019. 3. 13.〉
 - ②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 취득 및 수료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다음 학기 개시 후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 학위 취득 및 수료 유예 취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 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3.〉
 - ③ 총장은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취소 신청서를 심사하여 학업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3.〉
 - ④ 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가 취소될 경우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금의 환불은 학칙 제80조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 3. 13.>

부칙(2012. 10. 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2012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3.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서

대 학			학	과			
학 번			성	명			
이수학기수	()학기	총 취득학점		전체	평점평균	(.)
e-mail 주소			연락처	자택전호 휴대전호			
학사학위취득 및 수 사유(교과목 이수	– -						
학사학위취득 및 신청횟수	수료 유예 -	최초 신청(),	2회째 신	청()		
학사학위취득 및 수.	료 유예 학기	()	년 ()	학기			
	본인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60조, 학사관리규정 제69조의3 및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를 신청합니다.						! 수료
		20 년	월 일				
		신청	학생(본	인)		(서명)	
		신청	학생(보호	호자)		(서명)	
		경	학:	과장	대학	장	
		fr.					
 한국교워대학]	고총장 귀하		1		1		

* 별첨 : 성적증명서 1부

※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 1.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을 희망하는 자 및 수료 유예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란()에 ○표 표시할 것
-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적생 신분으로, 수료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졸업예 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유예기간 중에는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취소(일부예외)를 할 수 없음.
- 4.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입대, 4주이상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시 졸업(수료) 처리함. 동 기간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취소 신청서

대	학					학		과				
학	번					성		명				
이수학	학기수	()학기	총	취득학점			전체	평점평균	()
e-mai	il 주소					연락처	2	자택전 휴대전	화 : 화 : 화 :			
	취득 및 * 취소 사유		군입대	(), 질병	(),	フ]타()			
	학위취득 유예 학기	- •	()년 ()학기						

본인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학생(본 인) (서명)

신청학생(보호자)

(서명)

경	학과장	대학장
î,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귀하

- * 별첨(관련 증빙 서류)
-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4주 이상)
-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 취소 사유서 등

※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취소자 유의사항

- 1.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취소 사유 해당란()에 ○표 표시하고, 관계 증명서류 첨부할 것
- 2. 기타는 ()에 ○표 표시 및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서 첨부할 것

대학 강좌 개설 세부 기준

□ 공 통

영 역	강좌 개설 기준	비고
교양 과목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5명 이상	
전공 과목	15명 이상 또는 재학생 1/2 이상	

□ 예외인정 교과목

학과	교과목	강좌 개설 세부 기준 개선					
- ラ 匸	교실영어교육						
초등	초등전공 심화과정 교과목	o 다음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0 0l	음악전공실기	- 10명 이상 - 대상 학생의 2/3이상이면서 5명을 초과 - ※ 단, 2개 이상의 강좌를 합반하여 운영할 경우,					
음악	피아노실기	대상 강좌별 인원을 합산하여 기준 적용					
미술	미술전공실기						